연구보고서(수시) 2021-04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이다미
정해식·전지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21-04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발 행 일	2021년 5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786-3 93330

발|간|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가입상한연령은 계속 59세로 고정되어 있어 의무가입 종료 이후 수급개시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사이에 임의계속가입이나 보험료 추납 등 가입기간을 일부 메울 수 있는 조치들이 존재하나,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급개시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가졌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 및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64세까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장 시 고려해야 정책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다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연구진으로 본원 정해식 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원내/외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본원 우해봉 연구위원, 정창률 교수(단국대), 그리고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심성의껏 자문에 응해주신 권혁진 교수(경상국립대), 김수완 교수(강남대), 남재욱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양재진 교수(연세대), 이승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한기명 박사(한국장애인개발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구성 ····· 15

제2장 이론적 논의 ····· 21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 21

제2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31

제3절 연금개혁과 고령근로 ····· 40

제3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 53

제1절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 53

제2절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 ····· 63

제3절 소결 ····· 67

제4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 ····· 73

제1절 연구의 설계 ····· 73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 79

제3절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 84

제4절 소결 ····· 9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99

제2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정책적 시사점 ····· 102

참고문헌 ····· **109**

부록 ····· **119**

[부록 1]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남성 ····· 119

[부록 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남성 궤적 ····· 122

[부록 3]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여성 ····· 123

[부록 4]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여성 궤적 ····· 126

[부록 5] 종사상 지위별·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 127

표 목차

〈표 2-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 21
〈표 2-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 23
〈표 2-3〉 OECD 회원국의 실질은퇴연령과 법정은퇴연령의 차이 ····· 26
〈표 2-4〉 한국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추이 ····· 28
〈표 2-5〉 2000년 이후 한국의 기대수명 변화 및 2020년 이후 예측치 ····· 29
〈표 2-6〉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내용 ····· 33
〈표 2-7〉 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실업크레딧 신청자 비율 ····· 35
〈표 2-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1인당 월평균 지원액 ····· 36
〈표 2-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급자 현황: 성별 분포 ····· 37
〈표 2-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현황 ····· 37
〈표 2-11〉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38
〈표 2-12〉 국민연금법 상 반납 및 추납에 관한 규정 ····· 39
〈표 2-13〉 OECD 주요 국가의 남성 고령자(55~64세) 고용률 변화 ····· 41
〈표 2-14〉 유럽 주요국의 55~64세 고용률 전망치(2070년) ····· 44
〈표 2-1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비교 ····· 49
〈표 3-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1~2020년) ····· 54
〈표 3-2〉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 58
〈표 3-3〉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59
〈표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급여수준 ····· 60
〈표 4-1〉 연령대별 분석대상의 구분 및 분석시점 ····· 75
〈표 4-2〉 경제활동상태(status)와 코드값 ····· 76
〈표 4-3〉 모형 적합도의 판단기준 ····· 79
〈표 4-4〉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전체 ····· 80
〈표 4-5〉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전체 ····· 80
〈표 4-6〉 궤적 유형별 남녀 구성비 ····· 81
〈표 4-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 86
〈표 4-8〉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 89

〈표 4-9〉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 91
〈표 4-10〉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전체 ····· 92
〈표 4-11〉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 93
〈표 4-12〉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해당 유형 대비 비율 ····· 94

〈부표 1-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남성 ····· 119
〈부표 1-2〉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남성 ····· 120
〈부표 2-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성 궤적(5유형) ····· 122
〈부표 2-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성 궤적(5유형) ····· 122
〈부표 3-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여성 ····· 123
〈부표 3-2〉 잠재계층 4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여성 ····· 123
〈부표 4-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여성 궤적(4유형) ····· 126
〈부표 4-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여성 궤적(4유형) ····· 126
〈부표 5-1〉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 127
〈부표 5-2〉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 128
〈부표 5-3〉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 128
〈부표 5-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 129
〈부표 5-5〉 궤적 유형별 월 평균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 130
〈부표 5-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남성 ····· 131
〈부표 5-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여성 ····· 131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 17
[그림 2-1]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률(55~59세, 60~64세, 65~69세) ····· 27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 30
[그림 2-3]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원인 ····· 32
[그림 2-4] OECD 국가들의 평균 수급개시연령 변화 ····· 42
[그림 2-5] 유럽 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 변화(1970~2016년) ····· 43
[그림 2-6]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 분포 ····· 46
[그림 3-1] 60~64세 고령자의 취업 및 임금근로 추이 ····· 55
[그림 3-2] 60~64세 인구의 규모 및 비율 ····· 56
[그림 3-3] 연령집단별 임금근로자 비율 ····· 57
[그림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월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 62
[그림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 63
[그림 3-6]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 ····· 65
[그림 3-7] 60~64세 연금 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 66
[그림 3-8] 60~64세 연금 비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 67
[그림 4-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전체 ····· 81
[그림 4-2]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의 비율 변화 ····· 84
[그림 4-3] 연령 변화에 따른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 86
[그림 4-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구간별 현황 ····· 87
[그림 4-5]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 89
[그림 4-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차이: 남녀 구분 ····· 90

[부도 1-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남성 ····· 120
[부도 3-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4계층 모형: 여성 ····· 124
[부도 5-1] 연령 변화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 127

Abstract

A Study on Raising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Project Head: Lee, Dah M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dequacy of raising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NP). Although the pensionable age for the NP has increased,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remains fixed at 59. To be su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by means of which individuals can extend their participation beyond the mandatory age gap, such as "voluntarily & continuously contribution" and "additional payment." However, they are only temporary measures and fail to fill the gap between the pensionable age and the age cap for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whether the decisions made through the 1st NP reform in 1998, including the decision to mandatory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remain persuasive even now, 20 years la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mber of older workers who can contribute to the NP beyond the contribution age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at there is a segment of old-age benefits recipients who can afford to pay contributions to the NP even after reaching 60.

Co-Researchers: Jung, Haesik·Jun, Ji Hyun

Keyword : National Pension,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he elderly employment, Pension reform, Semi-parametric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었으나 가입상한연령은 여전히 59세에 머물러 있어 가입종료와 수급개시 사이의 공백이 유지되고 있다. 은퇴 후 연금 수급개시까지 급격한 소득단절(crevasse)이 발생하는 중이며, 이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노동시장정책은 고령자들이 이전보다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70세까지 고용보험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추납 등 부족한 가입기간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들이 있지만, 이들은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 수급개시 시점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59세 이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배제는 가입종료와 동시에 수급이 시작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들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연금개혁을 실시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제도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들 국가에서는 수급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가입상한연령이 없는 국가도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 재편의 일환으로 활성화(activation)가 강조되면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정책 결정의 잣대—가입상한연령의 유지—가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

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할 만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을 정책결정의 장(場)에 올리는 것이 이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과거의 판단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다. 이어서 50세 이후 고령자들의 64세까지 과거 15년간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궤적 분석(trajectory analysis)의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궤적 유형별로 연령 변화(50~64세)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 규모, 적용 시 고려사항들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퇴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노후보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욱 커졌다. 60~

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였던 것에서 2020년에는 33.3%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60~64세 고령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제법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 온 이들에게서 과거에도 연금수급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이미 상당한 가입기간을 확보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게 가입기간 연장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종사상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상의 결과들은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환기한다.

이어서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통해 궤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으로 총 5개 유형—① 미취업 지속형(1유형, 23.3%), ② 임시일용 은퇴형(2유형, 10.8%), ③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3유형, 9.1%), ④ 자영자 지속형(4유형, 40.6%), ⑤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5유형, 16.1%)—이 도출되었다. 자영자 지속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55세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바뀌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60세를 기점으로 점차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은퇴로 접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 분석대상의 65.8%는 60세가 지난 뒤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고, 이 중 남성 비율이 약 80%에 달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궤적 유형별로 연령대를 50대 전 기간(50~59세), 60~64세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A값(2019년 기준, 2,438,479원)' 이상인 비율을 살펴보았다. 60세 이후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이들 중

미취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화한 3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에서 60세 이후 소득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60~64세에 걸쳐 4유형(자영자 유지형)의 33.1%,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의 37.7%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4유형의 21.2%, 5유형의 23.2%가 국민연금 A값 이상의 월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의 50세부터 의무가입이 종료되기 전까지 10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비교한 결과,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서 매년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55세 이후 불안정 일자리에 진입한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자영자 지속형)에서 50세 이후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궤적 유형별 가입기간의 차이는 노동시장 내부자로 가입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이들의 급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권 확보와 급여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었으며(제3장),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 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즉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간 사회보험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비추어보면 소득파악이 용이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더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파악의 용이성, 가입 여력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가운데 가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 자영자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상으로는 가입 여력이 있더라도 기여회피나 고령자 고용의 감소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나 고용유지 시 임금보조 등의 방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고령자들이 가입대상에 편입될 경우, A값 증가가 둔화하여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포괄해야 하는 대상들을 A값 하락 등의 이유로 계속 표류(drift)하게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키워드 :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고령자 고용, 연금개혁,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1969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가입상한연령은 계속 59세에 머물러 있어 가입종료와 수급개시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1] 현재 59세 이후에게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가입종료와 동시에 수급개시로 이어지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들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정책 결정의 장(場)에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차이가 향후 노후소득의 공백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가입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신속히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1)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그 근거로 기대수명 증가, 입·퇴직연령 상승[2] 및 고령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들었으나(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8, pp. 38-39), 재정계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은 연금 수급 전, 약 5~7년의 급격한 소득단절(crevasse)을 발생시키며, 연금 급여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가운데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2020, p. 3). 물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추납 같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노후소득의 불충분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임의계속가입이나 보험료 추납은 제도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충분한 가입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한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김혜진, 신승희, 유현경, 2018, p. 18).

한편 오늘날 고령자 고용정책은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예로,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며,[3] 최근에는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따라 정년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년

2)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증가하였고, 실질 은퇴연령은 1980년 66.4세였던 것에서 2016년에는 72.1세로 5세 가까이 증가하였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8, p. 39).

3) 단,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용보험법」제10조).

4)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70세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7, p. 9).

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게 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5)]

우리보다 앞서 연금개혁을 실시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제도 간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급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을 함께 이루었고,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이다(정인영, 민기채, 2017). 후술하겠지만 수급개시연령보다 정년을 더 길게 정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한 국가들도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활성화(activation)' 전략이 강조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6)]

그동안 큰 틀에서 고령자 고용과 연금제도를 함께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년연장이나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노동공급 또는 노후소득수준의 변화, 그리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의 노동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혁창, 정창률, 박주완, 2014; 김진수, 남재욱, 정창률, 2015; 강소랑, 2015; 권혁창, 박주완, 2017; 남재량, 2019; 김수현, 2020).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헌수, 김형수, 2012; 유호선, 박주완, 유현경, 2014; 정인영, 민기채, 한신실, 2015; 김혜진, 김헌수, 이은실, 김아람, 2020)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소득활동 노령연금 같이 기존 급여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연구범위에 가입상한연령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김성숙, 홍성우, 2011; 정인영 외,

5) 지급대상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를 참조할 것.
6)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크게 기존의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미취업하는 경로로 구분되며 60세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2019년 5월 기준, 약 47%로 나타난다. 60세 초반 미취업자의 40%가 연령과 무관하게 계속 소득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임용빈, 2019, p. 81).

2015; 윤석명 외, 2019)은 주로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관련 해외사례 또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세대별 노후소득보장수준의 변화(우해봉, 한정림, 2017)를 다루고 있어 현시점에서 고령자 경제활동 특성의 변화와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정책 결정의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할 만큼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환경들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얼마나 적절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은 주로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한 급여인상 효과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 연금제도의 영역에서 단선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60~6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 50세 이후 고령자들의 15년간(50~64세)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궤적 분석(trajectory analysis)의 방식으로 살펴본다. 연령 변화에 따라 궤적 유형별로 소득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 규모,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은퇴가 점차 지연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노후

소득보장 영역으로의 원활한 이행(transition)을 도모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제도 간 정합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이론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의 형태, 연금개혁과 고령근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주요 논점으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의 변화, 국민연금 A값의 하락 우려, 보험료 부담에 따른 사용자와 고령근로자의 반발 및 보험료 미납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특성상 가입 당시 소득 외에도 가입기간이 급여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서구 국가들의 연금개혁에 따른 고령근로의 주요 변화 양상,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다룬다.

제3장('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에서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시점별 고령자 집단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특성, 소득분포 및 고용보험 가입 현황, 그리고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제4장('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궤적 분석')에서는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 이미 가입기간의 공백기(60~64세)를 지나온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1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도출하고,

연령 변화에 따른 궤적 유형별 소득 변화를 비교한다. 이때 연구 질문은 세 가지로 구성한다. 첫째, 50대를 지나 고령기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어떠한 궤적을 그리는가? 둘째,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 이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셋째, 이렇게 분류된 각 궤적 유형들은 연령 변화(50대→60~64세)에 따라 소득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상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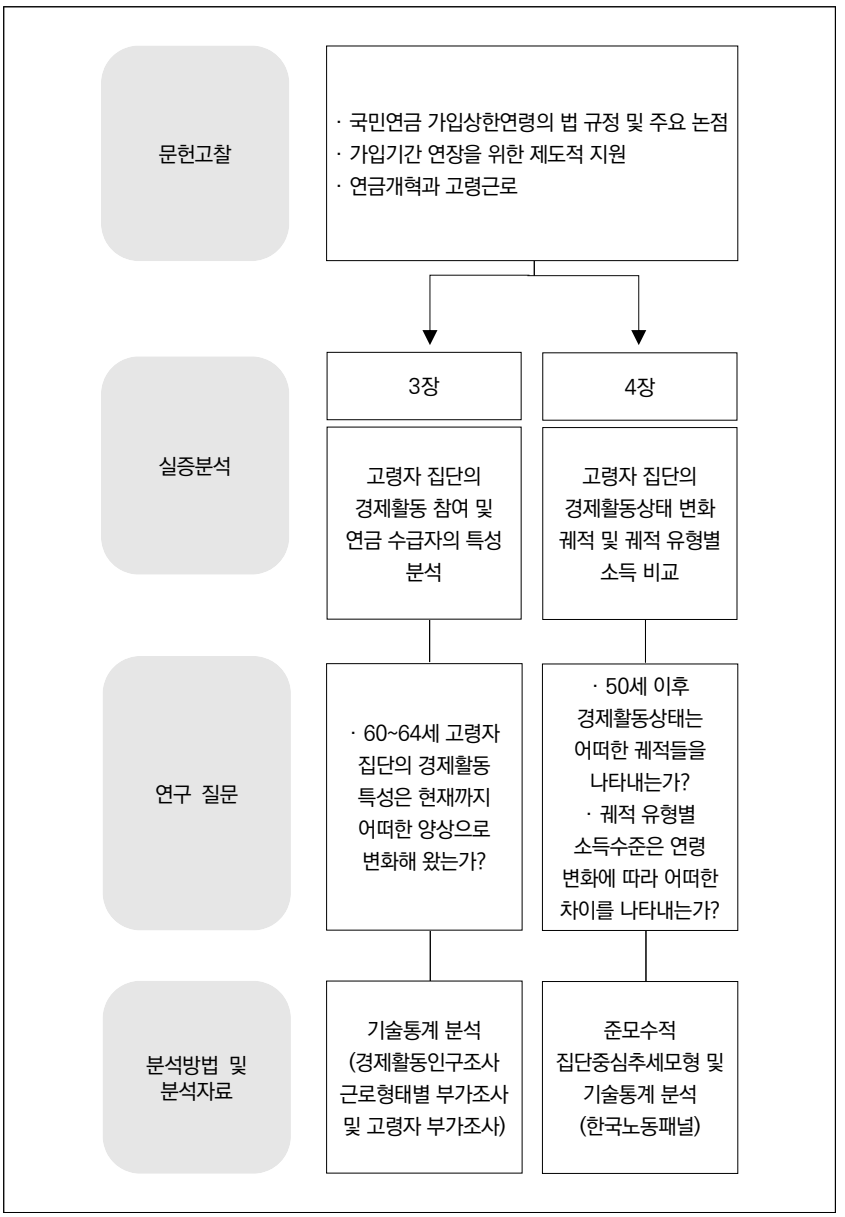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제3장에서는 각 연도 5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60~64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특성,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또한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 경험과 노동시장 참여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50세 이후 15년간(50~64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활용하여 추적한다. 해당 분석모형은 연령대로 묶이는 고령자 집단 내에 상이한 성장 궤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 각 개인이 갖는 상태 변화의 경로를 묶어내는 방식이다(남재욱, 류기락, 김영빈, 변영환, 최승훈, 2019, p. 130). 이 방법은 다양한 출생코호트 내에서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경로를 가질 수 있는 개인들의 궤적을 범주화하고 궤적별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우선적인 적용대상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22차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종단분석을 위한 균형패널 형태로 재구성한다. 분석에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내용과 분석자료의 특성은 해당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제2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제3절 연금개혁과 고령근로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및 주요 논점

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에 관한 법 규정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현재 당연적용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된 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수급권이 있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소득활동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표 2-1 참조).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수시로 탈퇴 신청을 할 수 있고, 65세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표 2-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이하 생략)

자료: 국민연금법,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에서 2021. 4. 2. 인출.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초기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계속해서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왔다. 당초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한 자'로 명시된 가입기준을 삭제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것이 10년으로 단축된 후에도 자격기준은 계속 완화되어 더 많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두었다(김혜진 외, 2018, p. 18).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대비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비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286명에 그쳤던 것에서 2020년에는 526,557 명에 이르렀고,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국민연금공단, 2021)(표 2-2 참조). 임의계속가입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60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가입한 기간이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혜진 외, 2018, pp. 4-5).[7)]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공적연금 도입 초기에 필연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지나도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수급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민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이들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제도의 형태로, 오늘날 소득비례 성격의 연금제도를 가진 서구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정인영 외, 2017, p. 48). 공적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7) 임의계속가입자들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혜진 외(2018)를 참조하시오.

제한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하며, 영국은 신국가연금(nSP)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출생코호트와 가입신청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김혜진 외, 2018, p. 112).

〈표 2-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단위: 명)

구분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988	1,370	286
1992	32,238	11,480
1995	48,710	15,760
1996	50,514	15,640
1999	32,868	168,570
2006	26,991	21,757
2007	27,242	27,148
2008	27,614	32,868
2009	36,368	40,935
2010	90,222	49,381
2011	171,134	62,846
2012	207,890	88,576
2013	177,569	117,018
2014	202,536	168,033
2015	240,582	219,111
2016	296,757	283,132
2017	327,723	345,292
2018	330,422	470,599
2019	328,727	497,865
2020	362,328	526,557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p. 1.

2.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논점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논점들은 지금까지 수급자로 등치되어 온 고령자를 둘러싼 여러 사회정책의 기준들을 다시 정의하게

된 배경과 연결된다.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노인기준연령의 재정의, 생산시기 연장, 기대수명 증가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었고,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평가받는 현시점에서 임의계속가입이나 보험료 추납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국민연금 A값이 하락할 우려,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부작용 등을 들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의견도 상존한다.

가. 노인기준연령의 재정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 그 동안 노인은 사회적으로 노령기 이전까지는 소득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는 경제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피부양자로 인식되어 왔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령자는 의존적 존재, 다시 말해 생산적인 노동자와 시민이 아닌 비생산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중년과 노년 간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Thane, 2005). 최근 들어 이러한 연령규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민효상, 남재욱, 2017, p. 128).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복지대상자들을 재조정(recalibration)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적 지위 인식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생계활동을 하는 이의 연령상한을 만 55세로 보던 견해를 폐기하고, 사회적 제반 상황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만 65세까지 생산활동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도재형, 2019).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한 것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언급하였다.

나. 생산시기의 연장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과거보다 생산시기가 생애주기의 후반으로 점차 연장되고 있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법정은퇴연령보다 10년 이상 높고, 고령자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혹은 공적연금의 수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방하남, 이다미, 2015, p. 17). 2019년 기준, 한국의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표 2-3 참조),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60~64세 연령대의 고용률도 높게 나타난다(그림 2-1 참조)(OECD, 2019).

2000년대 초반까지 서구 국가들에서는 고령자 상당수가 노령연금의 수급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면서[8] 은퇴연령은 소폭 상승하였다(OECD, 2019). 다만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정년과 실질은퇴연령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들에서 정년은 우리처럼 '은퇴해야만 하는(must retire)' 연령이 아닌, 경제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 근로자가 완전연금 수급권을 이미 획득한 상태에서 '은퇴할 수 있는(may retire)' 연령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방하남, 조준모, 이승길, 박수경, 김명중, 2008, p. 14).

8) 연금개혁 과정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구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였다.

〈표 2-3〉 OECD 회원국의 실질은퇴연령과 법정은퇴연령의 차이

(단위: 세)

구분	남성			여성		
	실질	법정	Gap	실질	법정	Gap
한국	72.3	61.0	11.3	72.3	61.0	11.3
멕시코	71.3	65.0	6.3	66.5	65.0	1.5
일본	70.8	65.0	5.8	69.1	64.0	5.1
칠레	70.0	65.0	5.0	66.7	65.0	1.7
뉴질랜드	69.8	65.0	4.8	66.4	65.0	1.4
이스라엘	69.4	67.0	2.4	66.0	62.0	4.0
미국	67.9	66.0	1.9	66.5	66.0	0.5
스웨덴	66.4	65.0	1.4	65.4	65.0	0.4
스위스	66.4	65.0	1.4	65.0	64.0	1.0
노르웨이	66.1	67.0	-0.9	64.1	67.0	-2.9
캐나다	65.5	65.0	0.5	64.0	65.0	-1.0
네덜란드	65.2	65.8	-0.5	62.5	65.8	-3.2
덴마크	65.1	65.0	0.1	62.5	65.0	-2.5
영국	64.7	65.0	-0.3	63.6	62.7	0.9
독일	64.0	65.5	-1.5	63.6	65.5	-1.9
오스트리아	63.5	65.0	-1.5	60.8	60.0	0.8
이탈리아	63.3	67.0	-3.7	61.5	66.6	-5.1
스페인	62.1	65.0	-2.9	61.3	65.0	-3.7
프랑스	60.8	63.3	-2.5	60.8	63.3	-2.5
OECD 평균	65.4	64.2	1.2	63.7	63.5	0.2

주: 2018년 기준.

자료: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88893404202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률(55~59세, 60~64세, 65~69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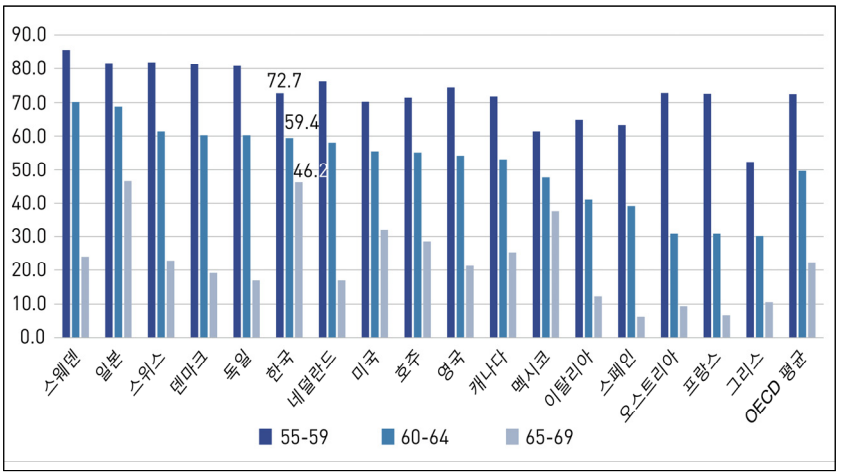

주: 2018년 기준.
자료: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88893404197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고령자 고용률은 계속 증가해 왔다(표 2-4 참조). 1998년 58.8%였던 고령자 고용률은 2019년에는 66.9%로 나타나 20년 사이에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통계청, 2020. 7. 28.).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높은 편에 속한다(그림 2-2 참조)(OECD, 2019). 이런 가운데 2013년 4월에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5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60세 정년연장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9] 고령자 고용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60세 정년을 이제는 65세로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계속 논의되고 있다(유진성, 2020).

9)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년연장은 2017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표 2-4〉 한국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고령자 인구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998	10.6	61.2	58.8
2001	10.6	59.7	58.4
2004	11.0	60.1	58.8
2007	11.2	61.9	60.6
2010	12.3	62.7	60.9
2013	14.0	65.8	64.4
2016	16.3	68.1	66.2
2019	17.7	68.9	66.9

자료: 통계청. (2020. 7. 28.).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379&topic=C&pp=20&datecount=&recommend=&pg에서 2021. 3. 19. 인출.

다. 기대수명의 연장

한국의 남녀 기대수명은 빠른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 2000년에 평균 76세였던 기대수명은 2019년에 83.3세로 나타나 지난 20년 사이에 7세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2-5 참조).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는 상황에서도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기간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가입기간의 제한은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50년이 되면 88.2세(남성 86.2세, 여성 90.1세)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특성상 인구구조 변화가 지출 규모와 재원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수급자 수와 수급기간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연금재정 악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p. 14).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1,767명으로 최고점(peak)을 찍은 뒤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3명이 된다. 반면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는 2018년 3,669천 명에서 2063년이 되면 15,58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p. 59). 이에 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계속 높아져 2030년 35%, 2060년에는 11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p. 60).[10] 이 같은 예측 결과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을 지금보다 더욱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표 2-5〉 2000년 이후 한국의 기대수명 변화 및 2020년 이후 예측치

(단위: 세)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000	76.0	72.4	79.7
2003	77.3	73.8	80.8
2006	78.8	75.4	82.1
2009	80.0	76.7	83.4
2012	80.9	77.6	84.2
2015	82.1	79.0	85.2
2018	82.7	79.7	85.7
2020	83.2	80.3	86.1
2030	85.2	82.6	87.7
2040	86.8	84.6	89.0
2050	88.2	86.2	90.1
2060	89.4	87.7	91.0

주: 1)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2) 2020년 이후 예측치는 중위 가정에 기초.

자료: 2000~2018년의 기대수명은 e-나라지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1. 4. 2. 인출, 2020년 이후 예측치는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p. 35를 재구성한 것임.

10) 제도부양비는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로 계산한다.

라. 국민연금 A값 하락의 문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편인 고령자 집단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할 경우, A값의 증가가 둔화하여 급여수준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1999년에 도시지역가입자를 확대하자 다음 해에 A값이 1,290,803원에서 1,271,595원으로 하락했다(그림 2-2 참조). 김성숙, 강성호(2004)에서도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이 저소득 가입자들의 급여수준을 높일 수도 있는 반면, A값 하락에 따른 우려로 마땅히 적용대상으로 편입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함"을 지적한 바 있다(윤석명 외, 2009에서 재인용).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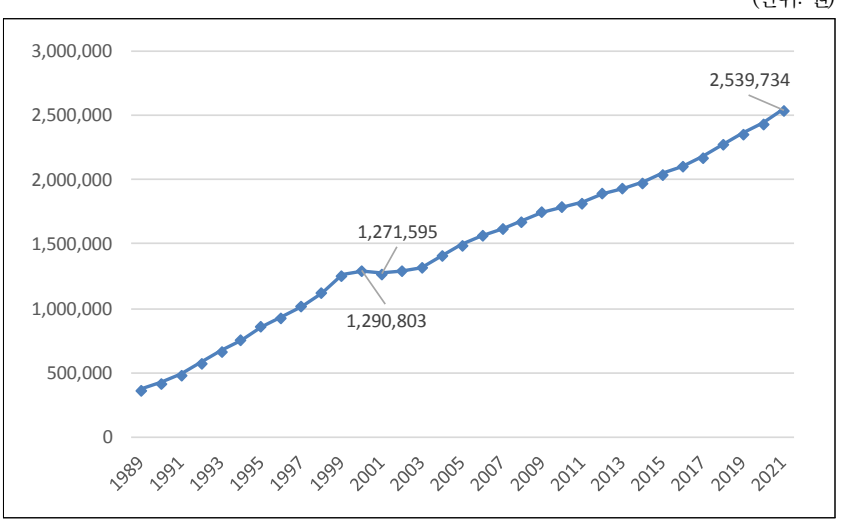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1. 1. 22.). 2020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p. 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151에서 2021. 4. 19.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사용자(기업)의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 미납의 증가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는 이들에 대한 고용 연장이나 신규채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보험료 체납이 잦다는 점에서 김성숙, 홍성우(2011)는 60세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또는 영세 자영자 대다수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미납 규모가 커져 가입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제2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국민연금제도는 그 특성상 가입 당시 소득 외에도 가입기간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가 급여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입기간 확대, 넓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 지원의 한계를 통해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환기한다.

흔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할 때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하는데. 사실 이 둘은 분절된 개념이 아니다(그림 2-3 참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가입시점에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인구집단 혹은 그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개념은 수급권을 획득하더라도 근로 당시 소득이 낮았거나 가입

기간이 불충분하여 저급여로 인해 노후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정인영, 2015, p. 35).

2019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로 나타나며, 타 직역연금 수급률을 고려해도 적용 사각지대의 규모는 약 51%에 달한다(원시연, 2020, p. 2). 급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이 541,033원으로 중위소득 5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국민연금공단, 2021, p. 23).[11] 따라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임의계속가입만 가능한 60~64세 연령대의 적용 및 급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노령연금의 수급권 확보 및 급여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우해봉, 한정림, 2017, p. 7).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그림 2-3]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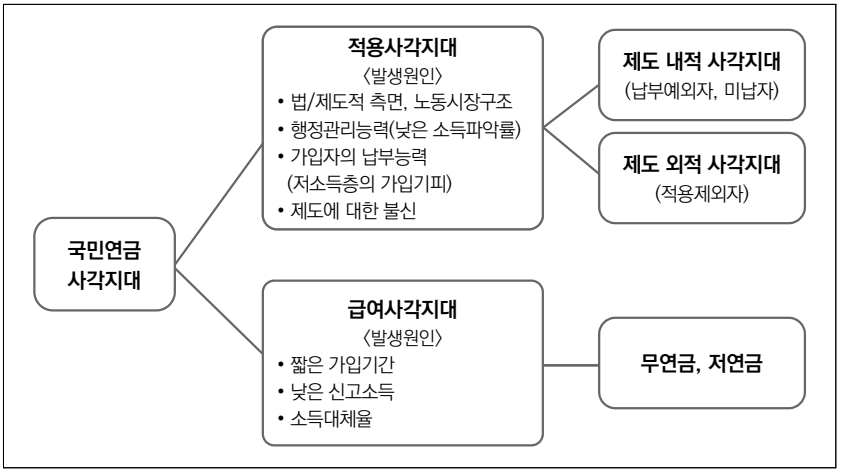

자료: 김혜진, 김헌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p. 36. [그림 Ⅱ-1].

11)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제외한 평균액

〈표 2-6〉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내용

구분			내용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인정기간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5자녀 이상(50개월)
		재원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
		인정소득	노령연금 취득시점의 A값 100%
	군복무크레딧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
		인정기간	6개월
		재원	전액 국고
		인정소득	노령연금 취득시점의 A값 50%
	실업크레딧	대상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인정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최대 12개월)
		재원	본인부담 25%, 국고 25%,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70만 원 상한)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임의가입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 중인 농어업인
		재원	전액 국고
		기준소득	97만 원
		지원액	기준소득월액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기준소득월액 초과: 보험료의 50% 정액 (월 43,650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기가입자는 2021년 1월부터 지원에서 제외
		재원	전액 국고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기준소득	220만 원 미만
		지원액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음	
가입제약 완화	보험료 선납 및 추납,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제도		

자료: 우해봉, 한정림. (2017).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4(2), p. 8의 〈표 1〉을 2021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

1. 가입기간 인정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이 실시되고 있다. 크레딧은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의미한다. 양육 같은 돌봄노동, 군복무, 실업, 직업훈련, 교육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 미납이 초래할 수 있는 저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Fultz, 2011, p. 1). De Freitas et al.(2011)에 따르면, 관대한 방식으로 크레딧을 적용할 시 유럽 국가들에서는 평균 5년의 경력단절을 거의 상쇄(offset)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OECD, 2015, p. 3에서 재인용). 한국처럼 공적연금에 소득비례적 성격이 내재된 국가들에서는 주로 실업크레딧과,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비교적 관대한 방식으로 양육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2)]

한국은 2007년부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2016년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실업크레딧의 경우, 신청자 비율이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표 2-7 참조). 실업크레딧은 지원자격이 구직급여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낮고, 가입 인정기간(12개월)과 인정소득(실직 전 소득의 50%)이 낮아 수급 시 급여상승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받는다(이다미, 권혁진, 2019; 유호선, 김아람, 2020).

12) 한국의 양육크레딧 도입 필요성 및 설계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호선, 김아람(2020)을 참조하시오.

〈표 2-7〉 구직급여 수급자 대비 실업크레딧 신청자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신청자	신청비율
2016	293,648	128,143	43.6
2017	782,104	369,272	47.2
2018	865,983	416,319	48.1
2019	917,383	463,153	50.5
2020.03.	294,520	166,367	56.48

주: 당해연도 누적 기준.
자료: 안서연, 이은영. (2018). 실업크레딧 인정기간 연장.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p. 32, 〈표 8〉; 김혜진, 김헌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p.70, 〈표 Ⅲ-18〉 두 자료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2.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있다.

1995년 도입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한다.[13]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하였으며, 매년 지원 상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8 참조).

13)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구조특별회계에서 100% 지원한다.

〈표 2-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1인당 월평균 지원액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월평균 지원액	38,816	39,183	39,454	41,518	43,650

자료: 2016~2019년-관계부처합동. (2020).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 p. 5;
2020년-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21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 위험과 노후빈곤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도입되었다(김재진, 이혜원, 2012). 근로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2021년 기준)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가입자들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최대 3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은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험료 미납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가입자 기여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세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유인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이병희 외, 2012, p. 1). 수급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혜진 외, 2020)(표 2-9 참조).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62만 개 사업장 소속 658만 근로자에게 총 4.35조 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지원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표 2-10 참조).

〈표 2-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급자 현황: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두루누리 수급자	537,173 (37.5)	892,045 (62.5)	1,429,218 (100.0)
전체 사업장가입자	8,182,968 (58.2)	5,878,923 (41.8)	14,061,891 (100.0)

주: 2020년 3월 말 기준.
자료: 김혜진 외.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p. 65. 〈표 Ⅲ-13〉 재구성.

〈표 2-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만 개, 만 명, 억 원)

구분	지원 사업장	지원 근로자	총 지원액
2016년	68.3	162.5	4,434
2017년	64.5	146.1	4,285
2018년	83.5	221.4	8,267
2019년	92.5	251.9	11,600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0).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 p. 4.

임금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사업이 부재하여 별도의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8. 30., p. 3). 이에 보건복지부(2018)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사업중단,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이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표 2-11 참조).

〈표 2-11〉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1.]

자료: 국민연금법,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에서 2021. 4. 2. 인출.

3. 가입제약 완화[14)]

가입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이하 반납)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이하 추납)가 있다. 반납은 「국민연금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동법 제78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다시 복원되는 제도를 말한다. 추납제도는 군입대, 실직, 폐업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되었던 가입자가 추후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납부하게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표 2-12 참조). 고소득층에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2020년 12월부터 10년 이상의 추납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14)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2장(이론적 논의) 제1절에서 설명하였기에 본 절에서는 생략하였다.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15] 임의가입자 규모는 1988년 1,370명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240,582명, 2020년에는 362,328명에 달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21, p. 1).[16]

〈표 2-12〉 국민연금법 상 반납 및 추납에 관한 규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이하 생략)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이하 생략)

자료: 국민연금법,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에서 2021. 4. 2. 인출.

15) 단,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은 임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6)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제3절 연금개혁과 고령근로

1. 고령자 노동공급의 증가

198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복지국가 차원의 대응은 고령자들의 조기은퇴를 독려하여 사회보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은 노동축소(labour shedding) 차원에서 계속 조기은퇴 경로를 유지하였고, 90년대 중반까지도 전체 서유럽 국가의 1/3 가까이가 60세가 되어서야 노동자들을 영구적으로 은퇴시키기 시작하였다(Kohli, Guillemard, Rein, & Van Gunsteren, 2001; Thane, 2006, p. 47에서 재인용). 1990년대 중반까지 OECD 주요 국가들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표 2-13 참조). 당시 연금재정 압박이 이미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과 노동시장의 유효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Turner, 2007; European Commission, 2018)(그림 2-4, 그림 2-5 참조). 그 결과, 노령층에 대한 사회지출 규모 증가, 세수 감소, 사회보험료 같은 비임금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연공서열적 임금구조 하에서 고령 근로자를 퇴출시켜 청년실업률을 관리해 온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이 점차 후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조기은퇴를 유도하던 여러 유인들은 점차 축소하는 상황이 되었다(Ebbinghaus, 2006). 사실 노동공급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고도의 기술변화로 고령 근로자들이 더는 예전 같은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전보다 육체적 능력을 훨씬 덜 요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연공임금의 특성상 젊은 세대보다 노동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경제적 이유로 이들의 조기은퇴 경향은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 못하였다(Thane, 2005). 고령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공급의 양은 점차 증가하였지만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1980년대 이후 고령인력의 상대적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 증가는 예전보다 일자리의 질이 낙후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철희, 2013).

〈표 2-13〉 OECD 주요 국가의 남성 고령자(55~64세) 고용률 변화

(단위: %)

구분	1980	1990	1995	2000
벨기에	47.7	34.3	34.5	36.4
캐나다	71.2	60.0	53.3	57.4
덴마크	63.1	65.6	63.2	64.4
프랑스	63.1	39.3	34.7	34.1
독일	64.1	52.0	48.2	46.4
일본	82.2	80.4	80.8	78.4
네덜란드	60.9	44.2	41.1	49.7
스페인	71.3	57.3	48.4	55.2
스웨덴	77.5	74.5	64.5	67.7
영국	62.6	62.4	56.1	60.0
미국	69.7	65.2	63.6	65.7

주: 1980년 수치는 벨기에, 덴마크 1983년, 영국은 1984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Stat.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lfs-data-en&doi=data-00287-en#에서 2021. 5. 25.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금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급여 삭감(cut back), 조기은퇴 시 연금급여 감액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정책수단을 적용하였다(Thane, 2006). 199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서구 국가들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이 정치적

부담이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모수적 조정(parametric adjustment)의 일환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든 후에는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고령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명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1, p. 5)

[그림 2-4] OECD 국가들의 평균 수급개시연령 변화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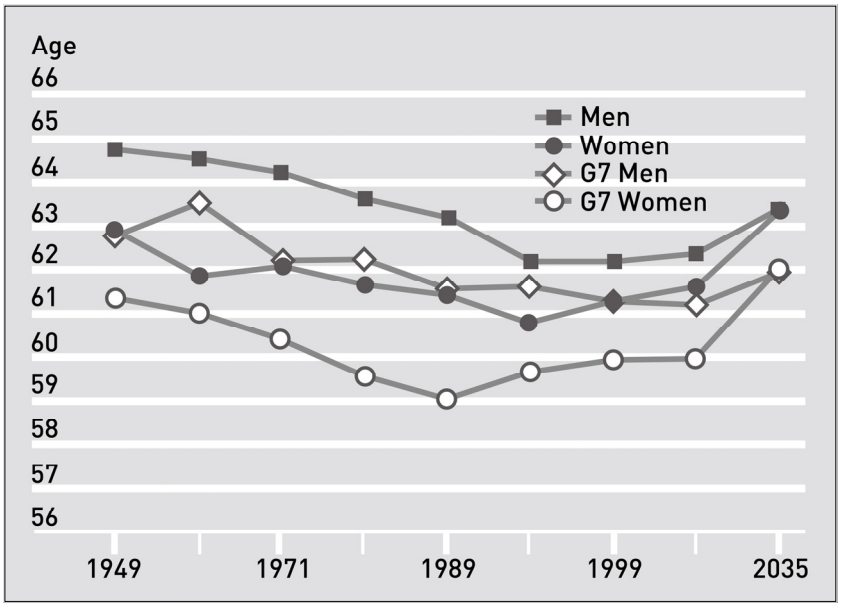

자료: Turner, J. (2007).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1949-2035.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1), p. 88, 그림 1.

〔그림 2-5〕 유럽 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 변화(1970~2016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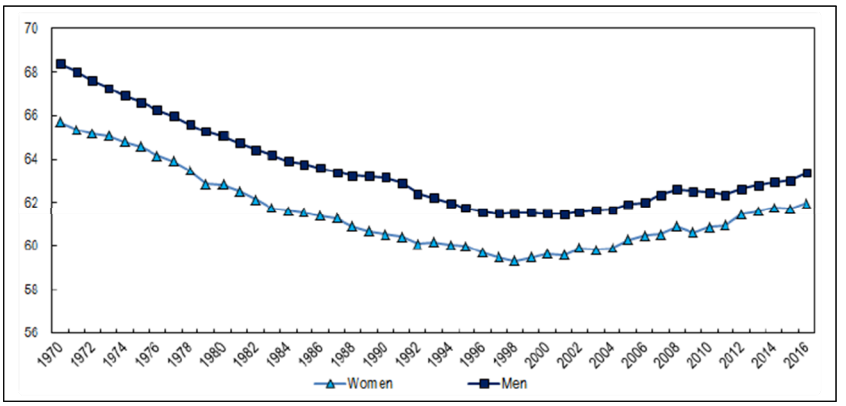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Pension Adequacy Report 2018, Vol.1. Luxemburg: European Commission. p. 85, 그림 45.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고령자들은 그들의 근로 생애를 연금수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최대한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동 공급을 늘려왔다. 2019년 기준, EU 국가들에서 55~64세 평균 고용률은 62.3%이며, 스웨덴은 81.7%에 달한다. 2070년이 되면 독일, 이탈리아도 고용률 70%를 넘기고, 핀란드는 8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p. 49). 고용률이 증가하게 된 제1의 원인으로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을 지목한다. 2070년까지 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 55~64세의 고용률 상승이 예측되며(표 2-14 참조), 조기 은퇴가 만연하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 비스마르크형 국가들(‘frozen welfare state’)에서 연금개혁의 점진적 영향으로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European Commission, 2020, p. 49).

〈표 2-14〉 유럽 주요국의 55~64세 고용률 전망치(2070년)

(단위: %, %포인트)

구분	2019년	2070년	상승폭
독일	74.6	76.0	+1.4
프랑스	56.9	67.0	+10.1
이탈리아	57.5	75.9	+18.4
네덜란드	72.0	78.5	+6.5
스웨덴	81.7	78.9	-2.8
덴마크	74.4	81.7	+7.3
핀란드	71.5	81.4	+9.9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0).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 Institutional Paper 142.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49, 〈표 1.2.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에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춘 이후 1993년 발라뒤르 개혁 당시 이를 다시 상향조정하였다. 프랑스에서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가 80년대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15년간 증가세를 보이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금개혁으로 고령근로에 부과된 암묵세율(implicit tax rate)[17]이 하락하면서 60~64세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조기연금, 실업보험, 장애연금 등 대안적 은퇴경로가 제한되면서 55~59세 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증가했다(Blanchet, Bozio, Rabaté, & Roger, 2019). 독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65세에 고정되어 있던 퇴직연령을 1972년 연금개혁법을 통해 63세까지 낮추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연금재정 압박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1989년에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였다(Häusermann, 2010). 이미 성숙한 다층체계를 구축하여 연금재정의 위기가 크지 않았던 스위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5년 연금보험법(AHV) 10차 개혁에서 62세였던 퇴직연령을

17) 은퇴를 1년 연기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 근로소득 대비 포기하는 연금급여액의 비율.

64세로 높이고, 2003년 11차 개혁에서는 여성의 퇴직연령을 1년 연장하였다(Häusermann, 2010). 이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수급개시연령 연장 외에도 조기퇴직 후 연금 수급 시에 급여를 삭감하는 장치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럽 사회정책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강조되면서 조기은퇴 제한에 머물지 않고, 고령자들의 근로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정책들이 동반되었다. 특히 노동공급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예로, 독일은 2007년부터 4년간 고령자 고용촉진, 조기퇴직 감소,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Initiative 50 Plus' 정책을 실시하였다(정인영, 2019, p. 239).[18] 아울러 연금재정 지출이 상당했던 독일과 스웨덴은 퇴직으로의 유연한 이행과 근로기간 연장을 목표로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분적 실업으로 인정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을 통해 보충하는 점진적 퇴직(gradual retirement) 방식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 미성숙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60세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특성을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0. 5.)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58.8%가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통계청, 2020. 7. 28.).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액 증가에서는 여전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18) Initiative 50 Plus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콤비임금(Kombilohn)은 고령의 실업자가 재취업 후 자신의 이전 직업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 첫해는 그 차이의 50%, 두 번째 해에는 30%를 정부가 국고로 메워주는 것을 말한다(백인립, 2010, p. 129).

특히 여성의 경우, 수급권 확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데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5.3%로 남성(64.7%)의 절반에 그친다(국민연금공단, 2021, p. 11). 2019년 12월 기준, 월평균 연금급여는 527,075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18만 원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비율이 21%에 달하며,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 비율이 44.6%로 가장 많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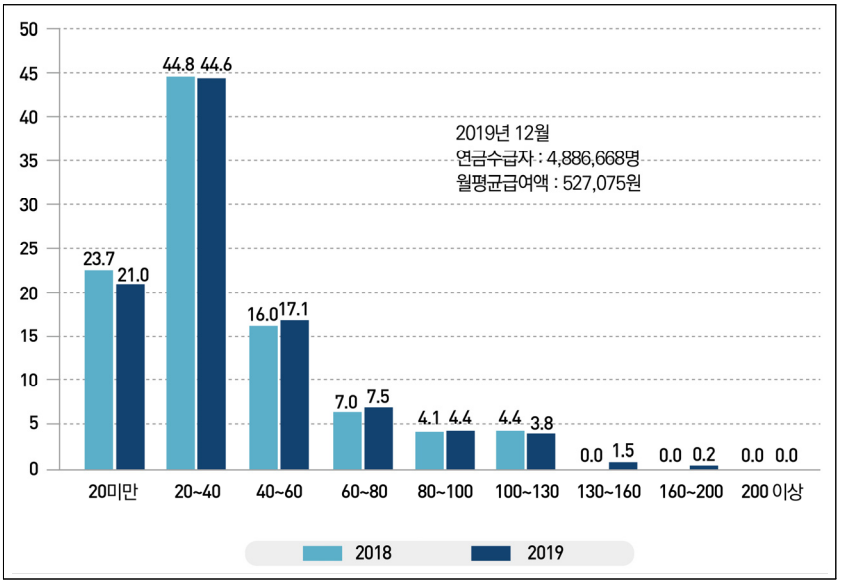

주: 1) 2019년 기준.
2) 월평균 급여액은 특례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금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0). 2019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p. 31. 그림 16.

이렇듯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은 55세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되며,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저임금 일자리 비율과 고용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난다. 중고령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양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특히 50대는 이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고용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자영자와 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종사상 지위 간 비중의 차이가 줄어드는 특성을 나타낸다(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p. 17).

2. 해외 국가들의 가입상한연령 기준

공적연금의 가입상한연령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체로 가입상한연령이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거나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정인영 외, 2015, p.81). 이 규정은 ①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하는 경우, ② 가입상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별도의 연령기준을 정한 경우로 구분된다(표 2-15 참조).

대체로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금개혁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면 가입상한연령도 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가입상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이며, 오스트리아는 근로소득 발생 시 당연적용 의무를 갖게 되는데, 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시간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19] 유연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개시연령의 상한까지 소득비례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20] 즉 가입상한연령은 대체로 수급개시연령

19) 2021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5.86 이하면 임의가입 대상이 된다.

직전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상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37년에 공적연금(OASDI)에서 65세 이하로 규정한 가입상한연령을 전격 폐지하였고, 1986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개정하여 은퇴연령의 제한을 없앴다(Lain, 2011).[21] 그 외 캐나다, 영국[22], 호주, 덴마크에서도 법에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을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정당해고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처럼 공적연금의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기초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이 59세로 수급개시연령과 5년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Act on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rsons)에서 60세였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켰다. 이 같은 고용 확보 조치에 따라 60세로 정년을 규정하던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상향조정,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김소영, 2019, p. 33).

20) 핀란드는 2005년 연금개혁을 통해 65세였던 법정 정년연령을 63~68세, 노르웨이는 2011년 연금개혁에서 67세였던 것을 62~75세로 유연하게 바꾸었다(윤석명 외, 2019).
21) 1963년 법 제정 때부터 40~65세 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였다.
22) 2011 고용평등(정년폐지)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Repeal of Retirement Age Provisions) Regulations 2011)에 따라 정년연령을 폐지하였다.

〈표 2-1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비교

구분	가입상한연령	수급개시연령
오스트리아	제한 없음 (근로소득 발생 시 계속 의무가입)	남성 65세, 여성 60세
독일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	67세 (2029년까지 상향조정)
이탈리아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	67세(2050년까지 69세 9개월)
스웨덴	제한 없음(NDC)	62세(NDC), 65세(GP)
노르웨이	근로소득 발생 시 75세까지 의무가입[1](NDC)	62~75세(점진적 은퇴) 67세(GP)
스위스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	남성 65세, 여성 64세
네덜란드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	66세 4개월 (2024년까지 67세 상향조정)
캐나다	65~69세의 경우, CPP를 수급하더라도 임의가입 가능	65세(CPP)
미국	제한 없음(OASDI)	66세 (2027년까지 67세 상향조정)
영국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가입 (NSP)	66세(NSP)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
일본	후생연금 70세 미만, 기초연금 59세	후생연금: 남성은 2025년까지 65세, 여성은 2030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기초연금: 65세

주: 노르웨이는 가입하한연령도 13세로 가장 낮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외국의 연금제도. https://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3.jsp에서 2021. 6. 8. 인출;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Country profiles of pension systems. https://www.oecd.org/publicat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에서 2021. 6. 8. 인출;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에서 2021. 3. 13. 인출; 캐나다는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cpp/you-stop-contributing-cpp.html에서 2021. 5. 29. 인출; 영국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https://www.gov.uk/tax-national- insurance-after-state-pension-age에서 2021. 4. 2. 인출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제1절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제2절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
제3절 소결

제 3 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1998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조치가 제외된 것을 단순한 제도적 미비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치를 포함할 시 사회적 반발이 상당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당시의 판단이 유효한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이 현재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과거의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제1절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1.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에서 2020년에는 62.5%로 7.5%포인트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2%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50~59세, 65세 이상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 기간에 각각 3.5%포인트, 5.5%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3-1 참조).

〈표 3-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세 이상 전체	61.3	61.6	61.7	62.7	62.8	62.9	63.2	63.1	63.3	62.5
15~19세	7.6	7.7	7.7	8.5	8.8	8.8	9.2	8.2	8.3	7.2
20~29세	63.1	62.8	61.7	63.1	63.6	64.5	63.9	64.0	63.9	61.2
30~39세	74.7	75.1	75.5	76.4	76.7	77.1	77.8	78.3	78.6	78.0
40~49세	80.1	80.0	80.0	80.9	81.0	81.0	81.1	81.0	80.2	79.1
50~59세	73.1	73.8	74.6	75.9	76.2	76.1	77.0	77.1	77.4	76.6
60세 이상	37.7	38.6	39.2	40.0	40.1	40.5	41.1	41.4	43.0	44.0
60~64세	57.0	58.0	58.8	60.0	61.2	61.6	62.5	61.4	62.1	62.5
65세 이상	29.7	30.7	31.2	31.8	31.1	31.3	31.5	32.2	34.0	35.3

자료: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1. 4. 5. 인출.

60~64세 고령 취업자의 규모는 2004년 1,050천 명에서 2020년 2,343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임금근로자 규모는 434천 명에서 1,399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림 3-1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8.7%로 증가하였고, 해당 연령대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서 6.8%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림 3-1〕 60~64세 고령자의 취업 및 임금근로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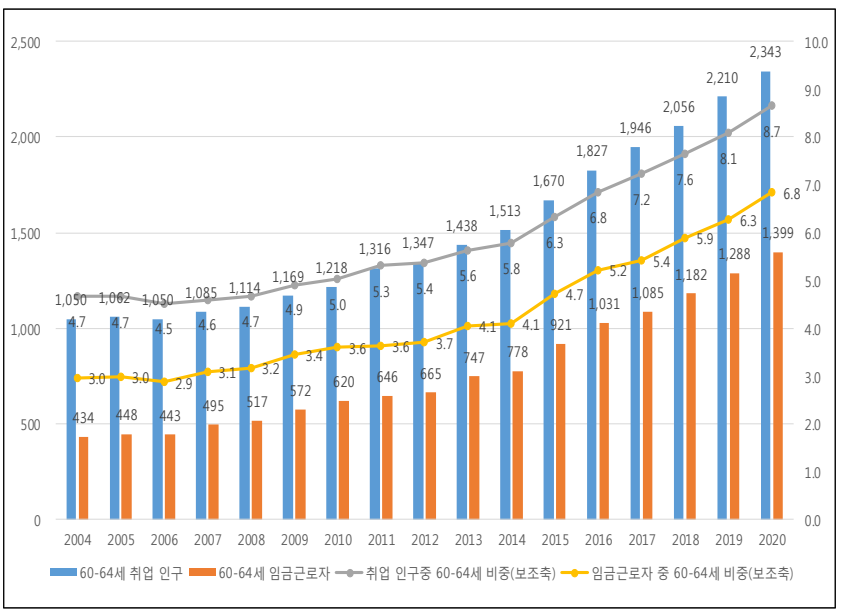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60~64세 취업자의 규모 및 비율 증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2021b)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0~64세 인구 규모는 2017년 317만 명에서 2023년 427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33년이 되면 448.9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연령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2%에서 2033년에는 8.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더라도 이들 연령대에 속한 취업자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60~64세 인구의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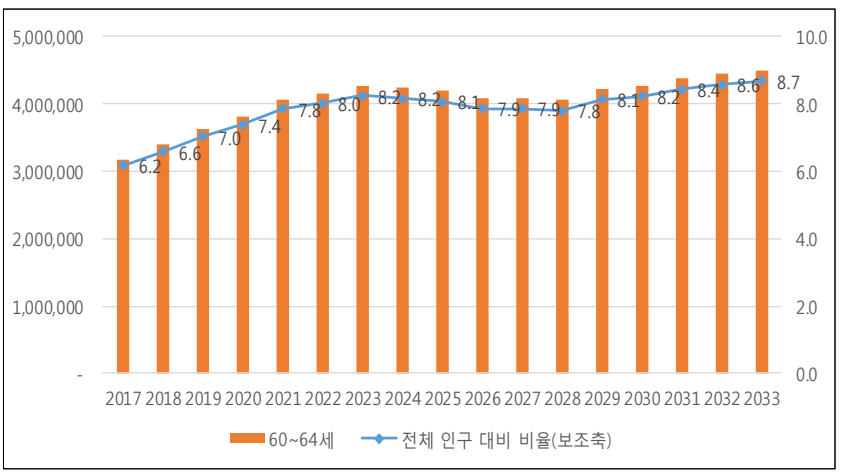

주: 1) 중위 추계 기준.
2)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자료: 통계청. (2021b).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에서 2021. 4. 5. 인출.

2. 60~64세 고령 취업자의 특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사실은 55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3〕은 연령집단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연령집단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64.9%에서 2020년 75.5%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의 증가 폭이 더욱 가파른데, 연령이 늘어날수록 해당 집단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두드러진다. 60~64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04년 41.3%였던 것에서 2020년에는 59.7%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3〕 연령집단별 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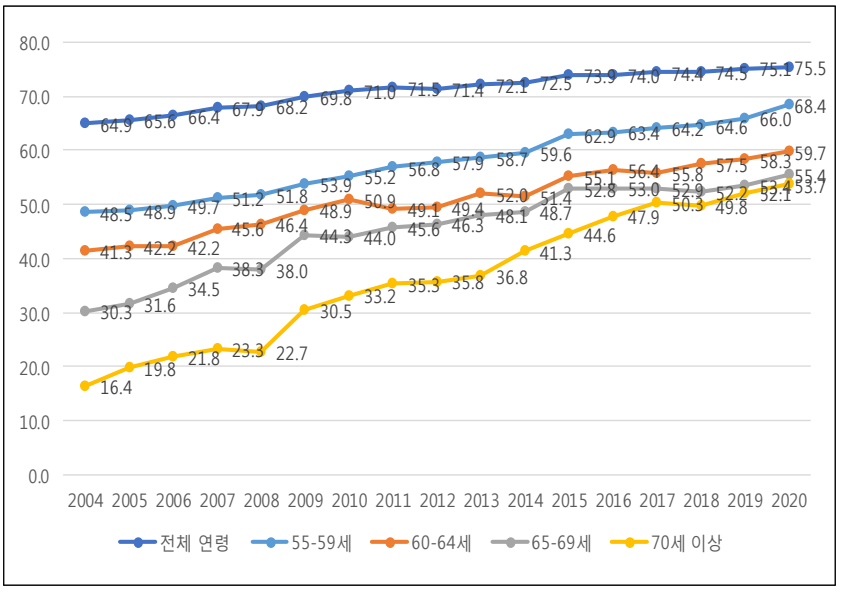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한편,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그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64세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 2010년 18.6%, 2015년 25.0%, 2020년 33.3%로 계속 증가해 왔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 증가는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 감소를 동반하였다. 자영자 비율은 2005년 35.5%에서 2020년에는 26.8%로 낮아졌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6%에서 7.2%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표 3-2 참조).

〈표 3-2〉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20
전체 연령	상용직 임금근로자	31.6	38.6	48.5	53.8
	임시직 임금근로자	22.9	23.4	19.5	16.8
	일용직 임금근로자	13.1	10.4	5.9	4.9
	고용주	6.7	5.6	6.2	5.0
	자영자	18.7	16.2	15.4	15.5
	무급가족종사자	7.0	5.8	4.6	4.0
55~59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18.8	25.8	37.6	48.1
	임시직 임금근로자	17.8	17.7	16.6	13.3
	일용직 임금근로자	15.8	14.1	8.7	7.1
	고용주	7.4	7.4	8.0	7.2
	자영자	30.7	26.1	22.2	18.8
	무급가족종사자	9.5	8.8	7.0	5.6
60~64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11.5	18.6	25.0	33.3
	임시직 임금근로자	19.5	23.2	21.3	18.3
	일용직 임금근로자	15.9	12.9	8.9	8.2
	고용주	4.9	4.3	6.1	6.3
	자영자	35.5	31.5	30.2	26.8
	무급가족종사자	12.6	9.5	8.6	7.2
65~69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5.6	10.2	16.9	23.8
	임시직 임금근로자	17.0	24.4	26.0	25.3
	일용직 임금근로자	15.3	14.1	9.9	6.4
	고용주	3.5	3.0	4.4	5.1
	자영자	44.1	35.5	34.0	31.0
	무급가족종사자	14.5	12.9	8.8	8.4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2004년 159.3천 명(36.7%)에서 2020년에는 592.3천 명(42.3%)까지 늘어났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167.6천 명에서 478.8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시간제 근로자는 59.6천 명에서 313.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전형 근로자는 137.4천 명에서 321.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04	433.8	159.3	274.5	167.6	128.7	59.6	137.4
2005	447.6	157.9	289.7	183.7	141.1	53.3	140.0
2006	443.3	164.1	279.2	171.2	136.2	63.6	142.7
2007	494.6	187.9	306.7	183.2	137.0	64.4	163.7
2008	403.2	186.9	314.0	188.2	146.5	63.3	172.3
2009	572.1	196.0	376.1	257.6	222.3	67.7	183.8
2010	619.8	240.7	379.1	215.5	180.1	92.7	208.6
2011	645.8	237.0	408.8	235.3	198.1	94.2	228.1
2012	665.3	249.7	415.6	231.2	190.8	127.3	224.5
2013	747.4	316.6	430.8	229.8	198.7	140.0	231.0
2014	777.9	330.0	447.9	247.5	215.7	141.9	226.8
2015	920.8	399.3	521.5	291.6	241.8	171.0	263.6
2016	1,030.6	429.6	601.0	330.9	278.3	209.4	304.1
2017	1,085.0	460.6	624.4	347.1	286.6	215.5	293.9
2018	1,181.9	511.5	670.3	375.5	317.2	253.0	278.7
2019	1,288.3	530.3	758.0	467.5	374.1	283.4	288.3
2020	1,399.4	592.3	807.1	478.8	406.4	313.7	321.7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만약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고령자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표 3-4〉는 임금근로자 중 월급여—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의 비율을 제시한다. 각각 월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자의 비율을

먼저 제시하고, 연도별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23] 이상자의 비율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준이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월 급여가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020년 67.5%까지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이 구간에 속하는 비율은 35%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상의 비율은 2020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38%,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14%로 나타난다.

〈표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급여수준

(단위: %)

구분	정규직 중					비정규직 중				
	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 200만 원 이상**	급여 300만 원 이상	급여 400만 원 이상	**평균 소득 월액 이상**	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 200만 원 이상**	급여 300만 원 이상	급여 400만 원 이상	**평균 소득 월액 이상**
2004	22.4	**14.2**	9.7	0.8	**22.4**	11.9	**3.8**	6.0	0.5	**11.9**
2005	30.2	**18.2**	13.9	0.8	**23.0**	9.6	**3.5**	8.8	0.5	**5.1**
2006	33.0	**22.1**	14.8	2.3	**24.6**	11.1	**4.4**	11.5	1.5	**7.1**
2007	36.2	**22.0**	14.2	2.4	**27.0**	11.4	**5.7**	10.1	1.3	**8.7**
2008	38.3	**27.2**	15.5	3.1	**31.7**	18.0	**8.1**	9.4	1.6	**10.5**
2009	42.1	**26.9**	17.2	1.2	**30.0**	12.3	**3.9**	10.2	0.6	**5.5**
2010	46.8	**29.3**	18.4	1.4	**33.7**	17.6	**6.3**	12.9	0.8	**8.6**
2011	47.6	**27.6**	16.0	4.0	**29.8**	21.9	**9.3**	10.8	2.8	**9.6**
2012	52.2	**31.6**	16.7	2.6	**31.9**	23.1	**10.6**	11.7	1.1	**11.2**
2013	57.6	**33.9**	15.7	5.1	**33.9**	26.4	**10.9**	9.5	2.6	**10.9**
2014	63.2	**38.6**	19.2	4.5	**31.0**	28.8	**12.2**	10.9	2.7	**8.6**
2015	64.4	**39.9**	18.2	3.8	**31.5**	35.2	**14.3**	10.3	2.0	**9.7**

23) 2020년 기준, 적용한 평균소득월액은 월 2,530,634원.

구분	정규직 중					비정규직 중				
	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 200만 원 이상**	급여 300만 원 이상	급여 400만 원 이상	**평균 소득 월액 이상**	급여 150만 원 이상	**급여 200만 원 이상**	급여 300만 원 이상	급여 400만 원 이상	**평균 소득 월액 이상**
2016	68.2	**43.5**	19.6	5.7	**33.5**	40.9	**17.2**	12.7	2.7	**11.5**
2017	75.1	**48.3**	20.9	6.2	**34.2**	46.0	**21.6**	12.8	3.0	**13.1**
2018	85.2	**60.0**	29.4	8.3	**43.3**	52.2	**24.9**	17.6	2.7	**12.8**
2019	90.7	**63.4**	31.8	9.1	**44.6**	59.7	**34.4**	20.5	3.7	**16.8**
2020	90.3	**67.5**	33.1	10.7	**38.0**	58.5	**35.0**	18.7	3.4	**14.0**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 중 하나로, 주당 근로시간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24] 이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3-4〕는 임금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인구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비율은 2007년 7.9%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0%를 나타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2020년 12.2%의 비율을 나타냈다.

24) 동법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에 따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림 3-4〕 60~64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월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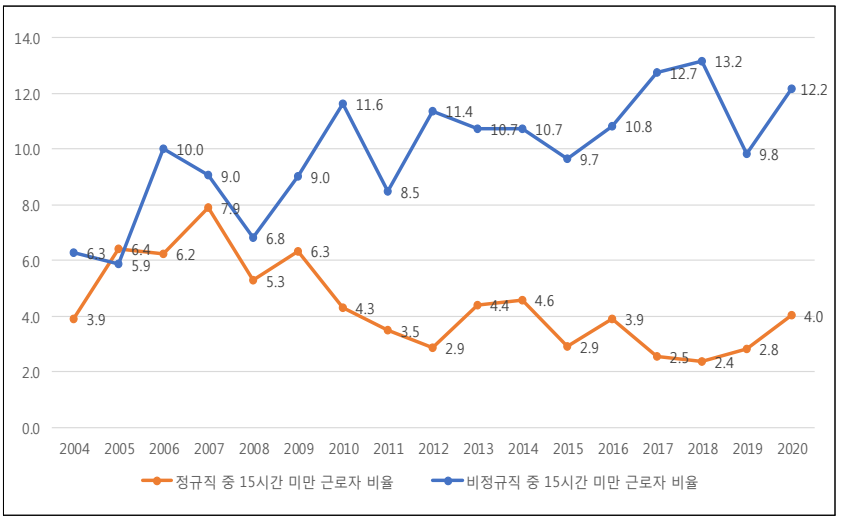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60~64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들 수 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률을 바탕으로 60~64세 연령집단의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림 3-5〕는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 35~59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도 함께 제시하였다. 60~64세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0년 73.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4.3%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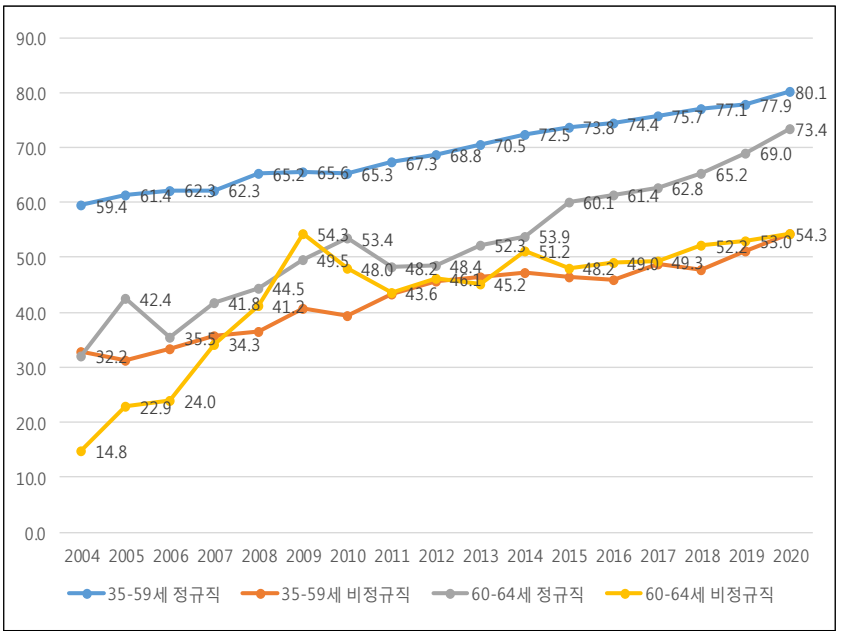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제2절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

1.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60~64세 인구집단의 국민연금 수급비율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조사연도별로 수급연령을 조정하여 수급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조사자료 구축 시 표본이 연령별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림 3-6〕은 60~64세 취업자 중 연금을 수급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만 5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된다. 이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포함하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에서 연금 수급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1년 62.6%였으나 2020년에는 38.7%로 하락한다. 한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연금 수급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5%에서 30.5%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43.7%에서 33.6%로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하락폭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60~64세 집단이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연금 수급의 가능성이 높았던 집단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60~64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경우 이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게 되면 수급비율 자체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3-6〕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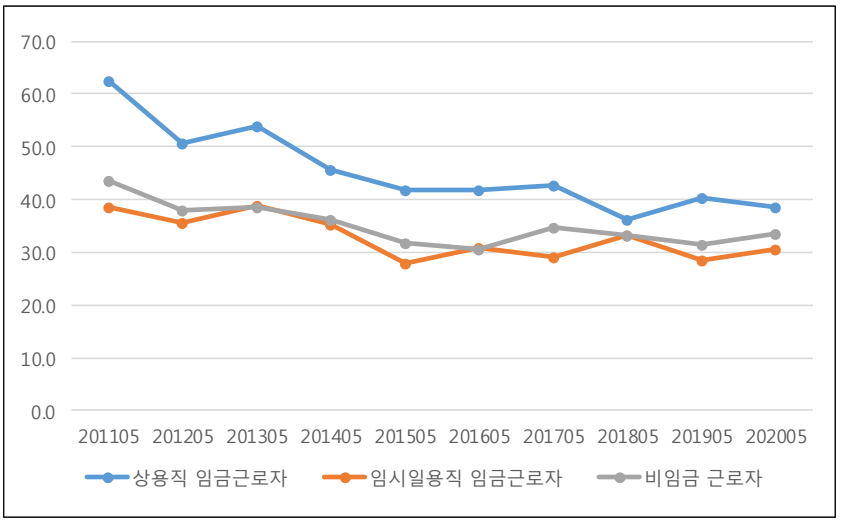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5월 기준). 원자료.

2.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유

〔그림 3-7〕은 연금 수급자 중 장래에 근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를 희망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전체 값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 '사회가 아직 나의 능력(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집에 있으면 무료하여/시간을 보내기 위해'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그림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금 비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유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 면밀히 관찰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7〕 60~64세 연금 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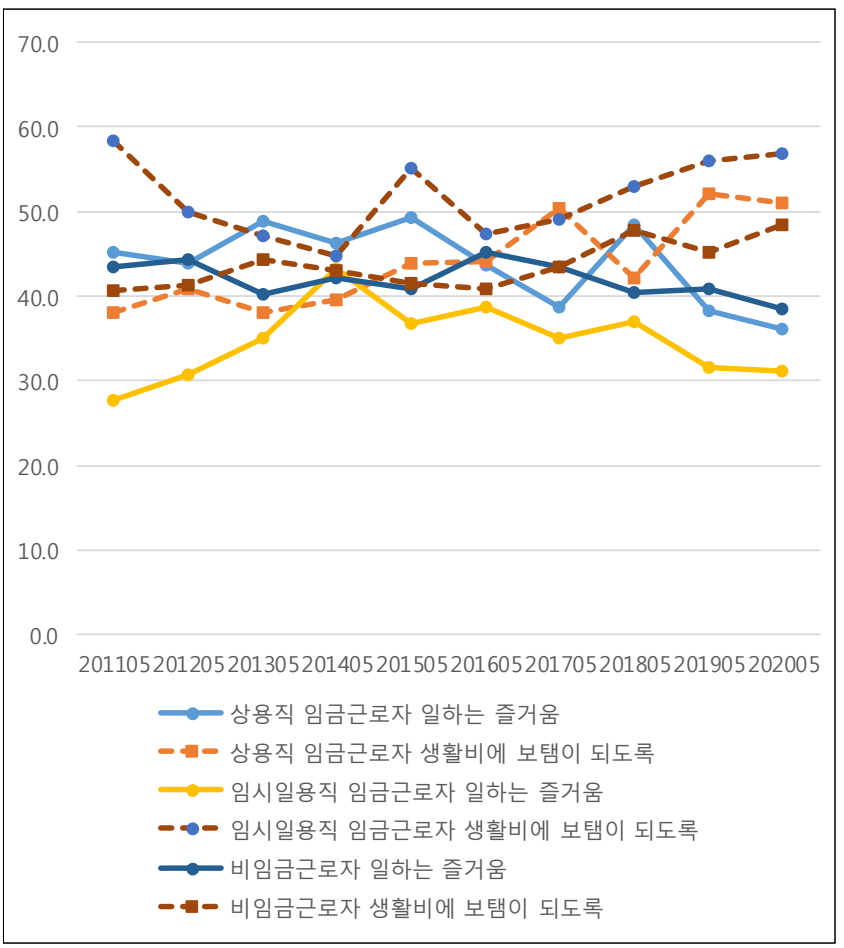

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를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으로 정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5월 기준). 원자료.

〔그림 3-8〕 60~64세 연금 비수급자의 장래 근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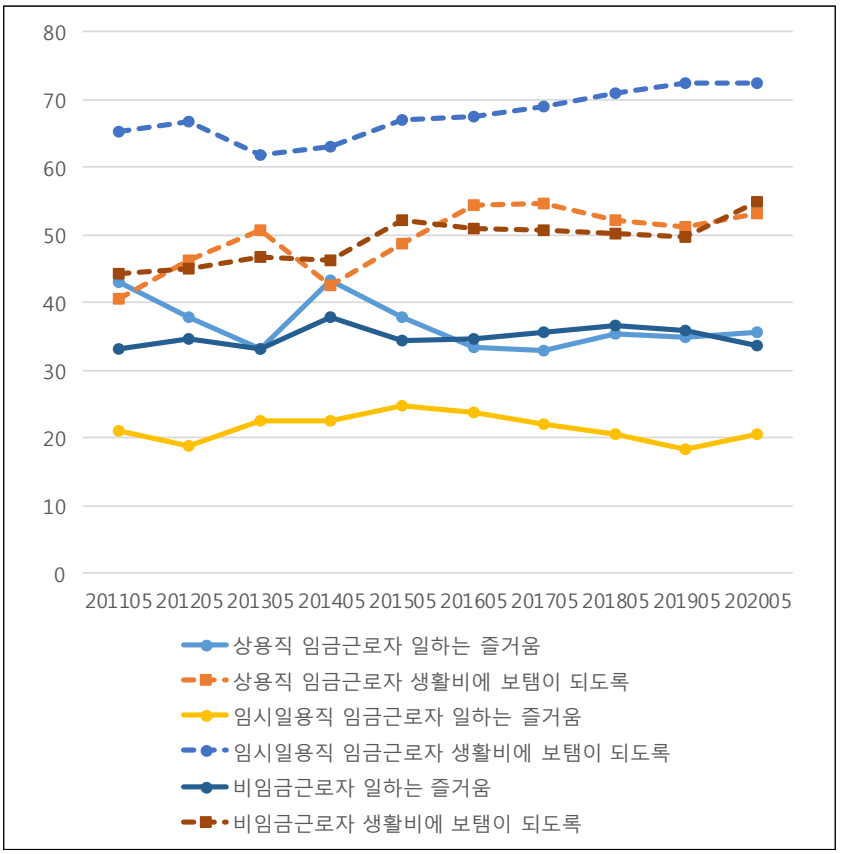

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를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으로 정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5월 기준). 원자료.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제3장에서는 중고령자,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60~64세 인구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 집단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를 통해,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가능성과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64세 인구가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7%에서 2020년에는 8.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60~64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41.3%에서 2020년에는 59.7%까지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제도 적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관리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한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관리를 시도할 경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사업장가입의 형태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60~64세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11.5%, 2010년 18.6%, 2015년 25.0%, 2020년 33.3%로 계속 증가해 왔다.

한편 가입 자격 관리의 용이성과 더불어 가입 대상자들의 제도 적용 수용성 측면에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2020년 67.5%,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35%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조치를 취하더라도 소득 감소에 따른 가입 회피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월 60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2020년 4.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2.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60~64세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은 계속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증가폭이 더

디고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연금 수급 경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연장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입과 수급의 간극을 메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금 비수급자가 계속 근로할 것을 희망하는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이라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보험료 지원과 같은 별도의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만 가입을 의무화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 조치를 적용한다면 이미 상당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입상한연령 연장 가능성을 훨씬 정교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4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

제1절 연구의 설계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제3절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제4절 소결

제4장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 후 60~64세 연령대를 이미 지나온 고령자 집단의 50세 이후 과거 1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도출하고,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중고령기 전체를 아우르는 시기에 발생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바탕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가능한 집단들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절 연구의 설계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를 기준으로 65~69세인 1950~1954년 출생자 1,422명이다.[25]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329명, 66세 255명, 67세 328명, 68세 229명, 69세 281명의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4-1 참조).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은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25) 주로 고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도 존재하지만 해당 패널은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2007년 이후에는 노동패널과 같이 매해 직업력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보다 정교하게 일자리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로 이승호 외(2020)에서도 노동패널을 가지고 고령자 노동시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에 걸쳐 1998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9년 22차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공개된 22차 개인용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용 자료는 그 특성상 연간 단위의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들이 제시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패널로 진입하기 이전의 회고적 일자리까지 포함하여 월 단위로도 일자리 관측이 가능하다.[26] 또한 최대 일(日) 단위까지 조사하므로 조사 기간 내에서 직업 이력 정보를 극대화하여 더 많은 정보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동패널은 다른 패널들과 동일하게, 조사된 변수와 시점이 불일치하여 자료 내 시점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27]

본 절에서는 직업력 자료를 기준으로 시점을 일치시키고, 월 단위로 측정된 일자리 상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해 자료와 병합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매년 종단분석이 가능한 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상태의 단기적 변화까지 추적하기 위해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각 패널들의 일자리를 월 단위로 쪼개어 총 180개월로 배열하고, 월별 이행상태에 대한 코드값을 넣어 분석자료를 다시 연(年)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개인용 자료에서는 매년 연속적인 일자리 변화를 정확하게 관측하려면 원칙적으로 차수별로 빠짐없이 응답한 패널만을 남겨야 하나, 직업력 자료는 중간에 패널에서 이탈했더라도 이후 다시 복귀한 경우,

26) 개인용 자료에는 취업시기만이 제시되지만 직업력 자료에는 취업시기와 퇴직시기가 모두 포함되어 제공된다.

27) 예를 들어, n년에 실시된 직업력 자료의 정보는 개인용 자료와 시차가 발생한다(한신실, 2018a, p. 417).

과거 일자리 정보를 업데이트하므로 일자리 상태의 공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때 경제활동상태는 '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0), 자영자(1), 임시일용직(2), 상용직(3)'으로 총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표 4-2 참조). 일반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 단위에서 일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미취업자와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같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여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취업과 함께 '무소득 상태'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 연령대별 분석대상의 구분 및 분석시점

(단위: 세)

구분	65세 (1954년생)	66세 (1953년생)	67세 (1952년생)	68세 (1951년생)	69세 (1950년생)
2018년	64	65	66	67	68
2017년	63	64	65	66	67
2016년	62	63	64	65	66
2015년	61	62	63	64	65
2014년	60	61	62	63	64
2013년	59	60	61	62	63
2012년	58	59	60	61	62
2011년	57	58	59	60	61
2010년	56	57	58	59	60
2009년	55	56	57	58	59
2008년	54	55	56	57	58
2007년	53	54	55	56	57
2006년	52	53	54	55	56
2005년	51	52	53	54	55
2004년	50	51	52	53	54
2003년		50	51	52	53
2002년			50	51	52
2001년				50	51
2000년					50
N	329	255	328	229	281

주: 2019년 기준, 당시 연령(만 나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표 4-2〉 경제활동상태(status)와 코드값

무소득 상태	소득이 있는 노동		
0	1	2	3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GBTM)을 사용하였다.[28] 본 모형은 전체 모집단이 종단적으로 단일한 성장궤적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관찰변수 중심(variable-centered)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 LGM)과 달리, 관찰대상 중심(person-centered) 관점에서 모집단이 다양한 발달궤적을 보일 수 있음을 가정한 것으로(정익중, 2007), 여러 발달궤적을 유형화하고, 특정 유형에 속한 대상들의 특성을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명일, 2016, p. 77). 즉 전체 모집단을 하나의 성장궤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변화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모집단 내에 확연히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이나 범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집단이나 범주를 구분함으로써 모집단 내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이 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이상문, 2011, p. 190). 성장모형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령자 집단이 비슷한 경제활동상태 궤적을 가진다

28) 집단중심추세모형, 잠재계층성장모형 등 추세모형(trajectory modeling)에 대한 구분 및 세부 특성들은 Lore et al.(2020)을 참조하시오.

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은 고령자 집단 내 초깃값(intercept)과 기울기(slope)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정한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50세 이후 64세까지 매해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다양한 궤적 유형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변수들이 척도의 형태로 통합되거나 정규분포를 따르면 절단정규모형(CNORM, censored normal model), '0' 값이 일반자료보다 과잉분포될 경우 0 이외의 다른 수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ZIP모형(poisson-based model), 이분형 변수일 때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게 된다(김명일, 2016, p. 77).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종속변수는 엄격하게 보면 범주형이지만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어느 정도 서열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김혜연, 2010; 박미희, 홍백의, 2014; 이승렬, 손연정, 2018; 한신실, 2018b), 척도 형태(0~3)로 설정하여 절단정규모형(CNORM)으로 궤적을 분석하였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연령)의 흐름과 종속변수를 연결시키는 각 잠재계층(latent class)의 변화 함수 추정을 통해 궤적을 확인하게 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노언경, 홍세희, 2009, p. 45).

$$Y_i[t]^j = \beta_0^j + \beta_1^j X_i[t] + \beta_1^j X_i^2[t] + \ldots + \beta_1^j X_i^k[t] + e_i[t]$$

$Y_i[t]^j$는 잠재계층 J에 속한 개인(i)의 시점[t]의 종속변수이고, 독립변수 X는 시간값이 된다. 이때 계수 β^j는 변화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잠재계층(j)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노언경, 홍세희, 2009).

먼저 3차(cubic) 함수부터 2차(quadratic), 1차(linear), 절편(intercept) 함수 모형이 유의한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잠재계층(group)의 수를 결정하는 통계적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과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이용하며(Akaike, 1974; Schwartz, 1978; 남재욱 외, 2019, p.13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속할 평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함께 확인하였다. 평균 사후확률은 0.7~0.8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궤적이 적절하게 분류 추정되었다고 본다(Andruff, Carraro, Thompson, Gaudreau, & Louvet, 2009).

이때 BIC 절댓값이 가장 낮은 모형이 최적 모형이 된다(Nagin, 2005).[29] 또 다른 기준으로 각 집단에 속할 최소 비율을 5%로 정하고, 궤적 유형별 소속비율을 확인하였다.[30] 간혹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BIC 절댓값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통계적 유의성은 BIC 차이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ln\triangle BIC$)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Jones, Nagin, & Roeder, 2001, p. 389; Nagin, 2005)(표 4-3 참조). 따라서 최적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집단 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BIC 값과 $\ln\triangle BIC$ 값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29) 잠재계층의 수(N-groups)를 1개부터 점차 증가시키면서 BIC 값을 확인하게 된다.
30) 궤적 유형별 비중이 최소 5% 이상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Jung & Wickrama, 2008, p. 312).

〈표 4-3〉 모형 적합도의 판단기준

$2\times\ln\triangle BIC$	H_0 기각 정도
0~2	받아들일 수 없음
2~6	긍정적
6~10	강한 긍정
10 초과	매우 강한 긍정

자료: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p. 38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31)]

1. 최적 모형의 선택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1계층 모형부터 그 수를 늘려가며 모형별 BIC 값과 $\ln\triangle BIC$ 값을 모두 고려한 결과, 5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BIC 절댓값과 $\ln\triangle BIC$ 값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5계층에서 6계층으로 늘어날 때 평균 사후확률이 6집단에서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4-4 참조). 이렇게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가장 적합한 궤적함수식과 집단 수를 결정하면 개인들이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이 제시된다.

분석 결과, 5계층 모형에서 해당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모두 0.95 이상이었으며(표 4-5 참조), 해당 모형 전체의 sigma p-value, 계층별 기울기와 절편의 p-value도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5계층 모형은 분류오류가 매우 적고, 표준오차나 추정계수 편의(bias)

31) 남녀를 각각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나누어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실시한 결과 및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는 [부록 1]~[부록 4]를 참조하시오.

등이 발생할 확률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4〉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전체

(단위: %)

구분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BIC		-31533.07	-26730.32	-24158.61	-23146.05	-22455.23
adj. BIC		-31529.01	-26718.13	-24143.71	-23125.74	-22428.15
AIC		-31521.12	-26694.46	-24114.78	-23086.29	-22375.55
ln△*BIC*		-	8.48	7.85	6.92	6.54
소속 확률	1	100.00	32.38	28.00	26.75	23.28
	2		67.61	52.73	10.80	10.82
	3			19.26	45.00	9.14
	4				17.42	40.59
	5					16.14

주: N=1,42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표 4-5〉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전체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평균 사후확률	0.9851899	0.958321	0.9774395	0.9855379	0.990858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2. 분석 결과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으로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4-1〕, 〈표 4-6〉과 같다. 남녀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① 미취업 지속형(23.3%), ② 임시일용 은퇴형(10.8%), ③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9.1%), ④ 자영자 지속형(40.6%), ⑤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16.1%)'으로 총 5개의 궤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림 4-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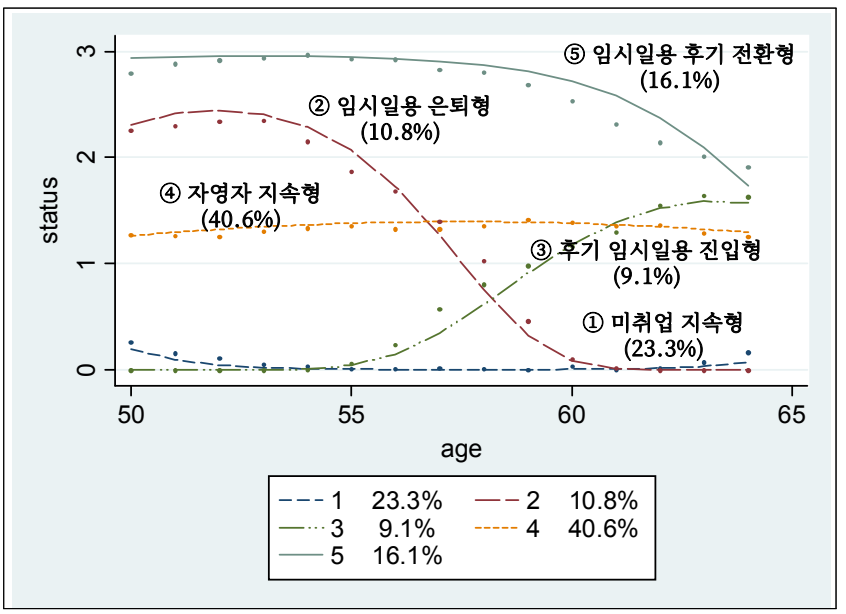

주: 1) status: 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0), 자영자(1), 임시일용직(2), 상용직(3)
2) N=1,42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표 4-6〉 궤적 유형별 남녀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남성	62 (4.4)	83 (5.7)	37 (2.7)	379 (26.6)	176 (12.4)
여성	268 (18.8)	74 (5.1)	90 (6.4)	200 (14.0)	53 (3.7)
전체	330 (23.3)	157 (10.8)	127 (9.1)	579 (40.6)	229 (16.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1유형은 50세 이후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취업 지속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23.3%를 차지하며, 여성 비율(81.2%)이 압도적으로 높다.

2유형은 55세까지 계속 임시일용직을 유지하다 서서히 은퇴하여 60세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 이탈하는 형태로, *'임시일용 은퇴형'*으로 명명하였다. 그 비율은 10.8%이며, 남녀 구성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3유형은 55세까지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다 이후 임시일용 일자리에 갖는 경우로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대비 비율(9.1%)은 가장 적지만, 여성 비율이 70% 가까이로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여성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유형은 분석기간 내내 자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자영자 지속형*'으로 명명하였고,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32] 줄곧 자영자 상태를 유지하는 높은 비율은 한국에서 고령자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는 주된 근거로 작용한다는 방하남 외(2008)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 5유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다 50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임시일용직으로 상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95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이들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60세 정년연장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상용직 일자리를 60세 혹은 그 이후까지 유지하는 별도의 궤적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5계층 모형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영자 지속형(4유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55~60세 사이에 기존 일자리(또는 미취업)

32) 이처럼 높은 비율은 자영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이승렬, 손연정, 2018)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60대(60~69세) 전체에 걸쳐 노동지위 변화를 살펴본 이승호 외(2020)에서는 자영자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19.1%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달리 65세 이상 연령대까지 분석기간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60세를 넘어서면서 고용상태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거나 노동시장에서 완전 이탈(exit)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65.8%)이 임금근로자나 자영자로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성의 80.3%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진입 경로는 다르지만 3유형과 5유형을 합친 25.2%가 60세 이후에 임시일용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추가로, 연령 변화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4-2 참조). 50세 이후 미취업,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한편, 상용직 비율은 50세 25.6%였던 것에서 64세가 되면 13.2%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자영자 비율은 분석기간 전체를 통틀어 약 20%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두드러진다.[33] 이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50세에 38.1%였던 임금근로자는 64세가 되면 그 감소폭이 6% 포인트에 그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용직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40~64세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분석한 결과, 40대에서도 자영자 비율은 계속 20% 초중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석명 외, 2019).

〔그림 4-2〕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의 비율 변화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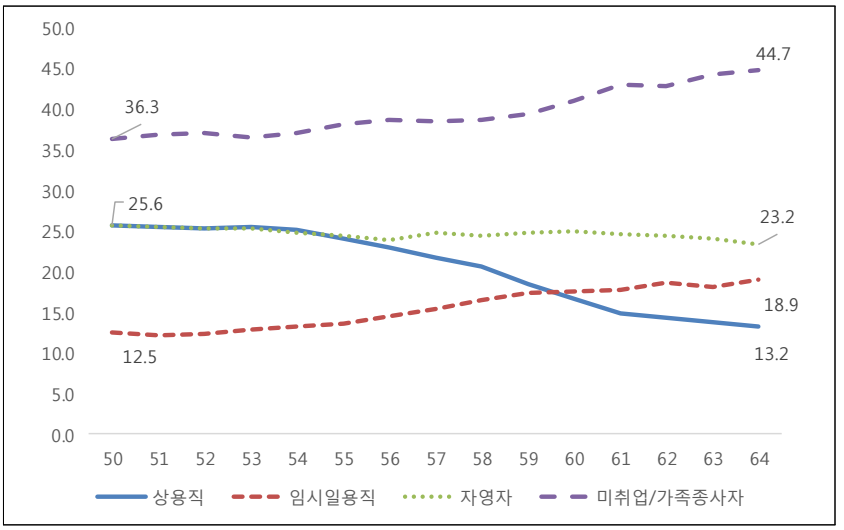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제3절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된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유형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34] 궤적 유형별로 50대 이후(50~64세)를 50~59세, 60~64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이를 통해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가능한 집단들을 판단한다. 소득수준은 ① 월평균 소득을 100만 원 단위 구간별로 나누었을 때 200만 원 이상, ② 임의계속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구간의 최빈값(12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③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하였다.

34) 2019년 이전의 소득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100으로 하여 2019년 명목가치로 환산하였다.

1. 월평균 소득 비교

가. 전체

50~64세 전체 분석대상의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은 〈표 4-7〉과 같다.

15년에 걸쳐 미취업 상태를 지속했던 1유형(미취업 지속형)의 월평균 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유형(임시일용 은퇴형)의 월평균 소득은 59세까지 약 157만 원을 유지하다가 60세 이후 완전은퇴로 접어들면서 '무소득'에 수렴한다. 미취업을 유지하다 55세 이후 서서히 임시일용 일자리에 진입하는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의 60세 이후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4유형(자영자 지속형)은 50세 이후 전 기간에 걸쳐 월평균 2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유지하였고, 60대에 접어든 이후 소득 하락 폭은 3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의 월평균 소득은 50대에 276만 원이었으나 점차 불안정한 일자리로 바뀌면서 그 수준이 18% 가까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소득수준을 종합해 보면,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임금근로자 상태로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5유형의 60세 이후 월평균 소득(184,3만 원)이 가장 높고, 자영자를 지속해 온 4유형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178.5만 원)을 나타냈다. 이미 고령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불안정 일자리에 새로 진입한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은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4-3 참조). 또한 60~64세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약 45%가 속해 있는 기준소득월액 구간(12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4-4 참조), 4유형(자영자 지속형)과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의 월평균 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단위: 만 원)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전체 (50~64세)	4.6	91.8	45.6	198	240.6
50~59세	5.2	157.1	19.8	208.4	276.2
60~64세	**3.4**	**1.5**	**100.1**	**178.5**	**184.3**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그림 4-3] 연령 변화에 따른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전체

(단위: 만 원,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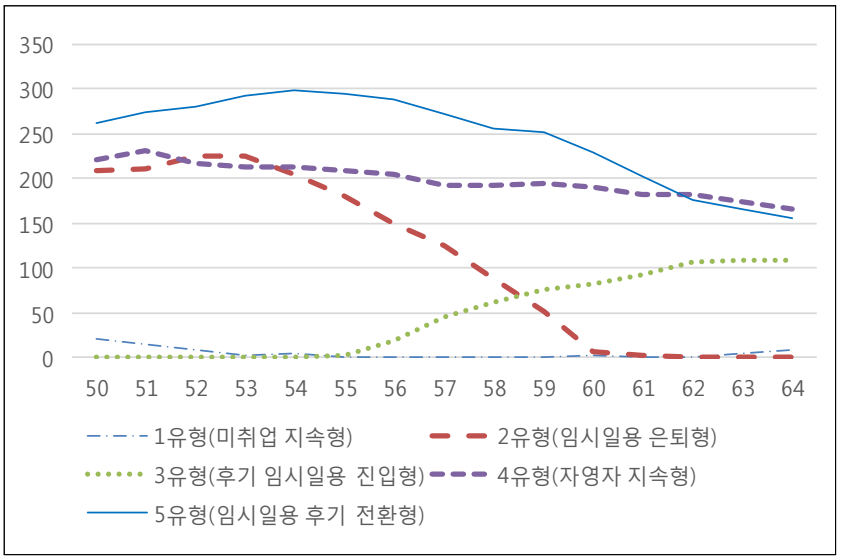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그림 4-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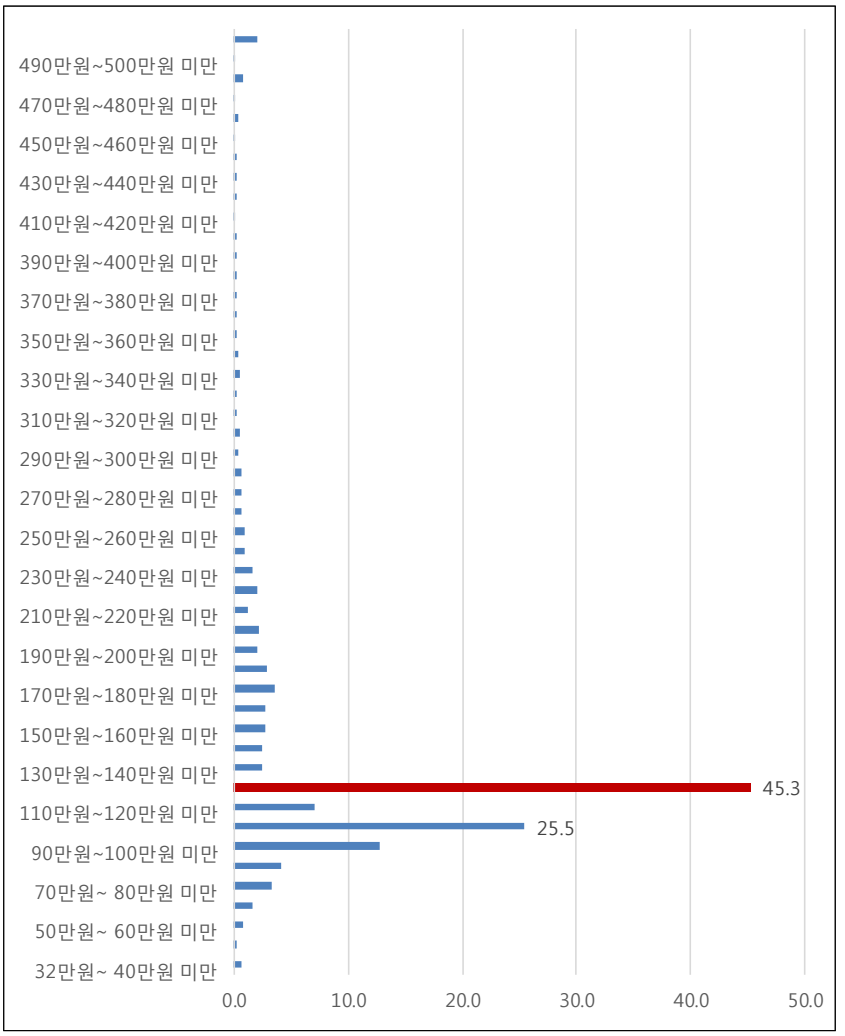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p. 4, '4.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가입자의 종류별/소득구간별'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남녀 비교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남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8〉, 〔그림 4-5〕, 〔그림 4-6〕과 같다.

4유형(자영자 지속형)과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 속한 남성들은 60세 이후에도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110만 원(4유형), 133만 원(5유형)의 월평균 소득을 나타냈다. 60세 이후 임시일용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한 여성(5유형)은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다 임시일용직에 진입한 남성(3유형)보다 높은 수준의 월 소득을 나타냈다. 4유형(자영자 지속형)에 속한 여성은 늦게 임시일용직에 진입한 여성보다 20만 원 정도 월평균 소득이 높지만 동일 유형 내 남성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절반에 그쳐 자영자 집단 내에서 남녀 격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임금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들의 불안정성이 비임금 노동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근주, 고영우, 김영아, 윤자영, 2019).

60~64세 궤적 유형별 남녀 월평균 소득 역시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120만 원 이상 130만 원 이하)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과 4유형(자영자 지속형)의 남성,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 속한 남녀 모두의 월평균 소득이 해당 구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단위: 만 원)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0~64세)	9.4	3.5	129.8	52.8	50.6	43.6	243.0	113.5	268.2	158.2
50~59세	10.2	4.0	229.1	87.7	15.8	21.3	258.3	115.1	312.3	172.7
60~64세	**7.9**	**2.4**	**2.3**	**0.6**	**122.8**	**90.7**	**214.6**	**110.7**	**200.2**	**133.4**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그림 4-5〕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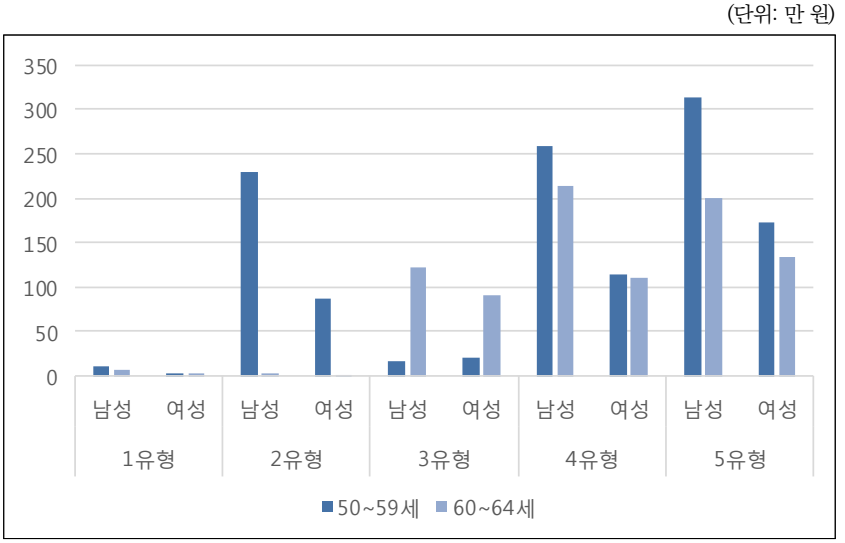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그림 4-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차이: 남녀 구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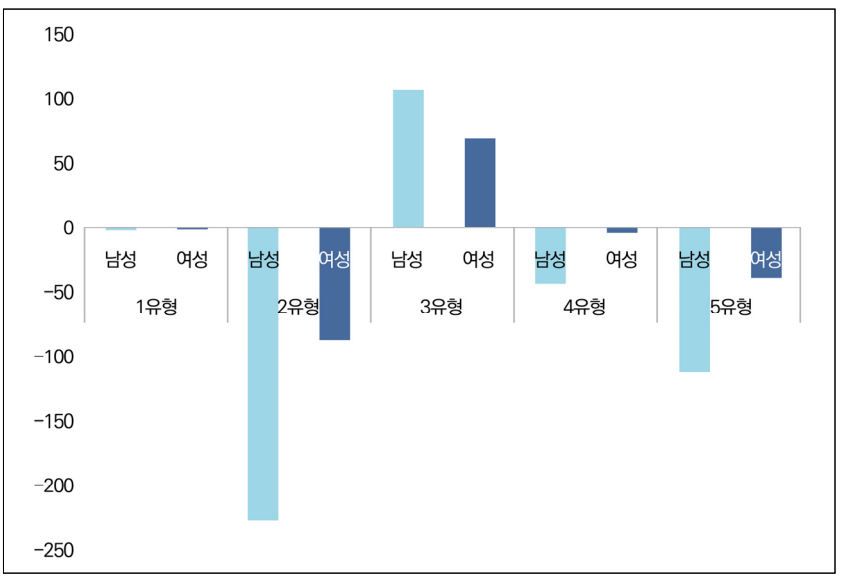

주: 1)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2) 50~59세 대비 60~64세 월평균 소득 차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2. 월평균 소득 비교: 소득구간별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100만 원 단위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임시일용 은퇴형(2유형)은 59세까지 28.9%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였으나, 미취업 상태에 접어든 60세 이후에는 거의 무소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 지속형(4유형)의 경우,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비율이 59세까지 39.1%, 60세 이후 33.1%로 나타나 소득분포상으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미미했다. 다만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해진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은 59세까지 57.8%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후에는 그 비율이 37.7%로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상용직에서 은퇴한 후 재취업한 임시일용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취업을 유지하다 60세 전후로 임시일용직에 진입한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의 소득분포이다. 60세 이후에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로 살아가며, 87.2%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98.11	68.69	79.18	32.58	15.7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34	14.42	15.22	30.43	34.2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26	6.94	3.86	17.61	21.7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08	2.90	0.82	8.37	11.97
	400만 원 이상	0.20	7.05	0.92	11.00	16.28
	200만 원 이상	**0.54**	**16.89**	**5.6**	**36.98**	**50.0**
50~59세	100만 원 미만	97.92	46.62	92.31	32.49	9.4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38	24.47	5.53	28.45	32.8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37	11.86	1.04	18.12	21.89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09	4.91	0.56	8.7	14.80
	400만 원 이상	0.24	12.14	0.56	12.23	21.09
	200만 원 이상	**0.7**	**28.91**	**2.16**	**39.05**	**57.78**
60~64세	100만 원 미만	98.48	99.23	51.52	32.75	25.8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28	0.51	35.64	34.12	36.45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06	0.13	9.80	16.66	21.5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06	0.13	1.35	7.76	7.50
	400만 원 이상	0.12	0	1.69	8.71	8.67
	200만 원 이상	**0.24**	**0.26**	**12.84**	**33.13**	**37.71**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이어서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표 4-10 참조). 60세 이후 미취업 상태인 1, 2유형에서는 A값을 초과하는 비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서 A값 이상의 월평균 소득 비율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서 자영자를 지속하고 있는 4유형(21.1%), 임시일용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3유형(6.9%) 순으로 나타났다. 4유형(자영자 지속형)과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은 50~59세 대비 A값을 초과하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감소폭(-23.2%포인트)은 5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계속 미취업을 유지하다 55세 이후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진입한 3유형은 50대일 때보다 60세 이후 월평균 소득이 높아져 A값을 초과하는 비율이 약 6%포인트 상승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4-10〉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전체

(단위: %, %포인트)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50~59세	A값 미만	99.48	76.46	98.72	71.38	53.51
	A값 이상	0.52	23.54	1.28	28.62	46.49
60~64세	A값 미만	99.82	99.87	93.07	78.85	76.80
	A값 이상	**0.18**	**0.13**	**6.93 (+5.65)**	**21.15 (-7.47)**	**23.20 (-23.29)**

주: 1)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2) 2019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은 2,438,679원.
3) 괄호 안의 수치는 50~59세 대비 60~64세 비율 변화(%포인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3.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궤적 유형별로 50세부터 59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비교하였다(표 4-11, 표 4-12 참조).

50세 이후 계속해서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였던 이들은 주로 미취업 지속형(1유형)과 자영자 지속형(4유형)에 분포하고 있다. 1유형은 50세 이후 계속 미취업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가입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더라도 길어야 2년에 그친다. 자영자 지속형(4유형)은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되어 가입이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의무가입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성실히 가입을 유지해 온 비율이 4유형에 속한 인원 대비 1%도 채 되지 않는다.

55세를 기점으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해졌으나, 꾸준히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5유형)에 속한 이들에서는 10년간 꾸준히 가입을 유지해 온 비율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유형에서 계속 미가입한 비율도 전체 분석대상의 7.3%로 5개 유형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미가입	22.9	7.6	8.0	32.9	7.3
1년	0.1	0.6	0.4	1.8	0.7
2년	0.1	0.1	0.4	0.9	0.4
3년	0.0	0.5	0.1	1.6	0.3
4년	0.0	0.5	0.0	0.8	0.4
5년	0.0	0.4	0.0	0.5	0.4
6년	0.0	0.4	0.0	1.0	0.5
7년	0.0	0.3	0.0	0.5	0.5
8년	0.0	0.2	0.0	0.2	0.8
9년	0.0	0.1	0.0	0.1	1.4
10년	0.0	0.4	0.0	0.4	3.4

주: 전체 분석대상(N=1,422) 대비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표 4-12〉 궤적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기간(50~59세): 해당 유형 대비 비율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미가입	98.8	68.8	89.8	80.8	45.4
1년	0.6	5.1	4.7	4.5	4.4
2년	0.6	1.3	3.9	2.2	2.6
3년	0.0	4.5	1.6	4.0	1.7
4년	0.0	4.5	0.0	2.1	2.2
5년	0.0	3.2	0.0	1.2	2.2
6년	0.0	3.2	0.0	2.4	3.1
7년	0.0	2.5	0.0	1.2	3.1
8년	0.0	1.9	0.0	0.5	5.2
9년	0.0	1.3	0.0	0.2	8.7
10년	0.0	3.8	0.0	0.9	21.4

주: 유형별 소속 인원 대비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제4절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0~64세까지 과거 1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은 총 5개 유형—① 미취업 지속형(23.3%), ② 임시일용 은퇴형(10.8%), ③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9.1%), ④ 자영자 지속형(40.6%), ⑤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16.1%)—이 도출되었다. 4유형(자영자 지속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55~60세 사이에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60세를 넘어서면 고용상태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거나 완전 미취업 상태로 접어들었다. 60대 이후 미취업 상태인 1, 2유형을 제외하면 전체 분석대상의 65.9%가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자로서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구간을 '① 100만 원 단위 구간별(200만 원 이상), ②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분포 최빈값(12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③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50~59세, 60~64세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취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바뀐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60세 이후 소득감소가 나타났고, 소득감소의 폭은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서 가장 컸다. 궤적 유형별로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분포 최빈값(12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과 4유형(자영자 지속형)에 속한 남성,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 속한 남녀의 월평균 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2019년 국민연금 A값(2,438,679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4유형과 5유형에 각각 속해 있는 21.2%, 23.2%가 A값 이상의 월 소득을 나타내고 있었다.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50대 전 기간에 걸쳐 매년 성실하게 가입한 비율은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55세 이후 임시일용 일자리에 진입한 이들의 가입기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약 20년 전 판단의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3장에서는 시점별로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이 현재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타 연령대와 비교해도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의 증가 추이가 눈에 띄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다. 아울러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였던 것에서 2020년에는 33.3%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동 연령대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비율을 살펴보았다. 정규직에서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4%대에 머무는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12.2%를 나타냈다.

이어서 60~64세 취업자의 연금 수급비율을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수급경험 비율에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근로자와 달리, 지난 10년 사이 상용직 임금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경험 비율은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 60~64세 고령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 온

이들이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기 전인) 과거에도 연금수급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 연령대를 대상으로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면 이미 상당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게서 가입기간 연장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는 종사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 정교하게 관찰함으로써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환기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60~64세 연령대를 이미 지나온 고령자 집단의 50세 이후 과거 1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도출하고, 궤적 유형별 소득수준 변화를 비교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으로 궤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은 총 5개 유형—① 미취업 지속형(1유형, 23.3%), ② 임시일용 은퇴형(2유형, 10.8%), ③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3유형, 9.1%), ④ 자영자 지속형(4유형, 40.6%), ⑤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5유형, 16.1%)—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 지속형(4유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55세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바뀌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60세를 기점으로 점차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5유형), 은퇴로 접어드는 양상(2유형)을 나타냈다. 이들 가운데 65.8%는 60세가 지난 뒤에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로서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고, 이 중 남성 비율이 80%에 달해 성별 격차(gender gap)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궤적 유형별 연령대를 50~59세, 60~64세로 쪼개어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A값(2019년 2,438,679원)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60세 이후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이들 중 미취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바뀐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에서 60세 이후 공통적으로 소득감소가 나타났고, 감소의 폭은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한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64세 동안 4유형(자영자 유지형)의 33.1%,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의 37.7%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4유형(자영자 유지형)의 21.1%,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의 23.2%가 국민연금 A값 이상의 월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불안정한 상태로 이행하는 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이나 미취업 후 노년기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재취업한 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은 비록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근로를 이어나가는 것이 노후의 급격한 소득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이승호 외, 2020)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이들의 50세부터 의무가입 종료(59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5유형(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에서 50대 전 기간에 걸쳐 매년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10년간 단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비율 역시 가장 낮은 수준(7.3%)이었다.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다 55세 이후 뒤늦게 임시일용 일자리에 진입한 3유형(후기 임시일용 진입형)에서 가입기간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4유형(자영자 지속형)에서 미가입 비율이 3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궤적 유형별 가입기간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내부자로 가입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고령자들의 급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권 확보와 급여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장에서 다룬 분석대상은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의 60~64세(1956~1960년생)라는 점에서 제4장의 분석대상(1950~1954년생)들이

60~64세를 지나온 때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0년에 60세에 진입했던 고령자들의 당시 노동시장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이 최근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2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정책적 시사점

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고려사항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때 적용대상 확대의 범위,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들의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으며(제3장),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는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도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연동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은[35]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임금근로자, 즉 60세 이상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확대에 따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35) 김용하(2019)가 대표적이다.

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더 연장하는 조치 역시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가입상한연령과의 간극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김유빈, 최충, 2017), 그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되어 장기간의 가입기간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정인영, 유희원, 한신실, 2016).

물론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회보험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비추어보면 대체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식 역시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근로자는 자영자와 비교할 때 소득 파악이 쉽고, 앞서 분석 결과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50세 이후 의무가입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금근로자 상태를 유지했던 집단은 가입 이력도 안정적인 편이었다. 따라서 소득 파악의 용이성, 가입 여력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가운데 가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 자영자나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보험료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기적 측면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중손실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국고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증가와 같은 적용 및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2019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가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 자영자는 기존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영세 자영자에게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 자영자에 대하여 아예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예외적으로 추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36]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적용 제외 때보다 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2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여회피 문제와 고령자 고용의 감소 우려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보험료율 상향조정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대상 확대 시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우려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추가 세제혜택이나 고용유지 시 임금보조 등 조세 및 고용정책 전반에 걸쳐 함께 논의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적용대상에 편입될 경우, A값의 증가가 둔화되어 급여수준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성숙, 홍성우, 2011). 김성숙, 강성호(2004)에서도 “재분배 기능의 A값이 저소득 가입자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반면, A값 하락에 따른 우려로 마땅히 가입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저소득층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윤석명 외, 2009, p. 41에서 재인용). 제도가 온전히 포괄해야 하는 대상들을 이러한 이유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계속 표류(drift)하게 하는 것은

36) 대표적으로 독일은 저소득 자영자에 대하여 사업초기 보험료 절감, 부과소득 하한선 설정, 추납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혜진 외(2020)를 참조하시오.

앞서 분석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꾸준히 가입기간을 유지해온 정규직 임금근로자—노동시장 내부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임의계속가입자들의 기준소득월액 분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이 보험료를 스스로 전액 다 부담하면서 의무가입 종료 이후에도 가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차후 급여수준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가 될 수 있다. 59세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하여 가입기간을 최대 5년 더 확보하더라도 과거 장기실업이나 미취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겨우 획득하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이나 빈곤 해소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을 5세 단위의 연령대로 묶어 분석하였으나 사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상태는 동질적이지 않다.[37] 향후에는 동일 연령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해야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현시점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의무가입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추후에는 이를 통한 가입기간 확보가 소득계층별로 실제 급여

37) 임의계속가입 유지,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기연금 수급 등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수준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후 추가적인 가입 이력의 확보가 실제 노인빈곤이나 노후소득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금재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을 시뮬레이션의 방식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정이나 급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을 예측할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특히나 이질적인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의무가입의 가능성을 근로시간과 소득 중심으로 판단,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소득에 기초하여 가입기간 연장을 확대하는 방식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단 실무자, 가입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후 10년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산출하였으나 패널자료의 특성상 회고적 일자리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최대 5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노령연금 수급률이나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상승 효과 분석 시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기간의 정확성이다. 그 내용은 현재 공단 전산자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기간의 전반적인 추이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확성에 기반한 실제 가입자자료(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정교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은 당장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기보다는, 향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령자 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고령자들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소랑. (2015). 국민연금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165-19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8. 30.).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지속가능성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 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http://eslc.go.kr/bbs/data/view.do?menu_idx=2235&bbs_m%20st_idx=BM0000000295&data_idx=BD0000000024&per_menu_idx= 에서 2021. 3. 19.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7).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020).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 file:///C:/Users/kihasa/Downloads/[7%EC%B0%A8]%20(4%ED%98%B8,%20%EC%84%9C%EB%A9%B4)%20%EA%B5%AD%EB%AF%BC%EC%97%B0%EA%B8%88%20%EB%82%A9%EB%B6%80%EC%98%88%EC%99%B8%20%ED%98%84%ED%99%A9%20%EB%B6%84%EC%84%9D%20%EB%B3%B4%EA%B3%A0%20(1).pdf에서 2021. 4. 10. 인출.

국민연금공단. (2020). 2019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02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외국의 연금제도. https://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3.jsp에서 2021. 6. 8. 인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8).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권혁창, 박주완. (2017). 국민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 33(4), 1-21.

권혁창, 정창률, 박주완. (2014). 특수직역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3), 27-50.

김근주, 고영우, 김영아, 윤자영. (2019).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명일. (2016). 노년기 빈곤궤적과 우울궤적의 역동적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김성숙, 강성호. (200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홍성우. (2011). 국민연금 가입연령의 타당성 검토.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김소영. (2019). 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Global Legal Issues 19-④,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김수현. (2020).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용하. (2019).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4차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자료집.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재진, 이혜원. (2012).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방안.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수, 남재욱, 정창률. (2015).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87-111.

김헌수, 김형수. (2012). 중고령자 조기은퇴 요인과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연. (2010). 중, 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233-259.

김혜진, 김헌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신승희, 유현경. (2018).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남재량. (2019). 고령시대의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 월간 노동리뷰, 2019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남재욱, 류기락, 김영빈, 변영환, 최승훈. (2019).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언경, 홍세희. (2009).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을 적용한 청소년기 초기의 공격성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관련요인 검증. 조사연구, 10(3), 37-58.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2020). 중고령자 노동시장 이탈과 정책방안.

도재형. (201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19년 4월호.

민효상, 남재욱. (2017). 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23-148.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방하남, 이다미. (2015). 동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인구학, 38(4), 1-32.

방하남, 조준모, 이승길, 박수경, 김명중. (2008). 한국의 정년현황실태와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인립. (2010). 유럽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연구: 영국, 스웨덴, 독일의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3), 99-138.

보건복지부. (201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1. 1. 22.). 2020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p.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151에서 2021. 4. 19.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212.

안서연, 이은영. (2018). 실업크레딧 인정기간 연장.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우해봉, 한정림. (2017).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4(2), 5-27.

원시연. (2020).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NARS 현안분석, 제163호, 국회입법조사처.

유진성. (2020).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유호선. (2018).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서울: 국민연금공단.

유호선, 김아람. (2020). 국민연금의 돌봄크레딧 도입 타당성 검토.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박주완, 유현경. (20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서울: 국민연금공단.

윤석명, 강성호, 권문일, 원종욱, 신화연, 이은혜. (2009).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최기홍, 최세림, 류재린, 배준호, 이정우, 박형존. (2019).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권혁진. (2019).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활용한 장기 전망. 사회보장연구, 35(3), 39-72.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도재형, 박귀천, 박제성.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문. (2011). 청소년 비행궤적에 관한 두 가지 모델의 검증: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5(2), 173-220.

이승렬, 손연정. (201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고령 노동과 빈곤.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이철희. (2013). 한국의 고령노동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논집, 52, 1-79.

임용빈. (2019). 고령층 (60 세 이상) 노동시장의 특징과 경제활동의 변화. 노동

리뷰, 74-90.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정인영. (2015).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33-62.
정인영. (2019).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Initiative 50plus와 Perspective 50plus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42, 219-258.
정인영, 민기채. (2017).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44(3), 39-68.
정인영, 민기채, 한신실. (2015).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유희원, 한신실. (2016).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청. (2019). 장례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0. 7. 28.).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379&topic=C&pp=20&datecount=&recommend=&pg=에서 2021. 3. 19. 인출.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 에서 2021. 4. 5. 인출.
통계청. (2021b).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에서 2021. 4. 5. 인출.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5월 기준).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2차 유저가이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한신실. (2018a). 이행노동시장과 중고령자의 노동경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년 춘추계학술대회, 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1-432.

한신실. (2018b). 한국 사회 중고령자의 소득절벽.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e-나라지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에서 2021. 4. 2. 인출.

[국외 문헌]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Gaudreau, P., & Louvet, B. (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Blanchet, D., Bozio, A., Rabaté, C., & Roger, M. (2019). *Workers' Employment Rates and Pension Reforms in France: The Role of Implicit Labor Taxation*. Working Paper 2573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papers/w25733에서 2021. 3. 10. 인출.

De Freitas, N. E. M., Duc, C., Briard, K., Mage, S., & Legendre, B. (2011). Career Interruptions: how do they impact pension right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Issues and Practice, 36*(3), 440-45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영국 노동연금부). https://www.gov.uk/tax-national-insurance-after-state-pension-age에서 2021. 4. 2. 인출.

Ebbinghaus, B. (2006). *Reforming early retirement in Europe, Japan and the US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01). *Supporting national strategies for safe and sustainable pension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3.7.2001. COM(2001) 362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LEGISSUM:c10126&rid=3에서 2021. 3. 8.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18). *Pension Adequacy Report 2018, Vol.1.*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20).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 Institutional Paper 142.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 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cpp/you-stop-contributing-cpp.html에서 2021. 5. 29. 인출.

Häusermann, S. (2010).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Modernization in hard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tz, B., & Jann, W. (2013). Mapping accountability changes in labour market administrations: from concentrated to shared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9*(2), 227-248.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ohli, M., Rein, M., Guillemard, A. M., & Van Gunsteren, H. (Eds.).

(1991). *Time for retirement: Comparative studies of early exit from the labor for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in. D. (2011). Helping the poorest help themselves? Encouraging employment past 65 in England and the USA.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493-512.

Lore, H., Nguefack, N., Pagé, M. G., Katz, J., Coiniere, M., Vanasse, A., Dorais, M., Samb, O. M., & Lacasse, A. (2020). Trajectory Modelling Techniques Useful to Epidemiological Research: A Comparative Narrative Review of Approaches. *Clinical epidemiology, 12*, 1205.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에서 2021. 3. 13. 인출.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Country profiles of pension systems*. https://www.oecd.org/publicat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에서 2021. 6. 8. 인출.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OECD.Stat.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lfs-data-en&doi=data-00287-en#/에서 2021. 5. 25. 인출.

Schwart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Thane, P. (2005). *The Long History of Old Age.* London: Thames & Hudson Ltd.

Thane, P. (2006). The History of Retirement.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pp.33-5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urner, J. (2007).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1949-2035.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1), 81-99.

[법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6호 2020. 7. 17. 일부개정(시행 2020. 7. 17.).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A0%EB%A0%B9%EC%9E%90%EA%B3%84%EC%86%8D%EA%B3%A0%EC%9A%A9%EC%9E%A5%EB%A0%A4%EA%B8%88%EC%A7%80%EA%B8%89%EA%B7%9C%EC%A0%95/(2020-106,20200717)에서 2021. 4. 8. 인출.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시행 2020. 12.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에서 2021. 3. 20. 인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시행 2020. 5. 2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83%81%20%EC%97%B0%EB%A0%B9%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3%A0%EB%A0%B9%EC%9E%90%EA%B3%A0%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에서 2021. 3. 16. 인출.

국민연금법,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시행 2021. 1.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에서 2021. 4. 2. 인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시행 2021. 4. 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1. 4. 2. 인출.

[부록 1]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남성

남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1계층 모형부터 계속 증가시켜 모형별 BIC 값과 ln△*BIC* 값을 모두 고려한 결과, 5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5계층 모형에서 해당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모두 0.9 이상이었으며(부표 1-1, 1-2 참조), 해당 모형 전체의 sigma p-value, 계층별 기울기와 절편의 p-value도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표 1-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남성

(단위: %)

구분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BIC		-17198.98	-15237.91	-13710.59	-12810.48	-12533.59
adj. BIC		-17194.91	-15231.14	-13698.41	-12791.53	-12510.57
AIC		-17188.01	-15219.63	-13677.70	-12759.31	-12471.45
ln△*BIC*		-	7.58	7.33	6.81	5.63
소속 확률	1	100.00	75.46	12.33	11.75	11.15
	2	·	24.53	59.39	57.11	43.71
	3	·	·	28.26	14.13	13.79
	4	·	·	·	16.99	15.51
	5	·	·	·	·	15.82

주: N=73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1-2〉 잠재계층 5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남성

구분	1유형 (후기 자영자 진입형)	2유형 (자영자 지속형)	3유형 (상용직 은퇴형)	4유형 (임시일용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평균 사후확률	0.9844739	0.9812152	0.9788561	0.9348077	0.99124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한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부도 1-1〕과 같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① 후기 자영자 진입형(11.2%), ② 자영자 지속형(43.7%), ③ 상용직 은퇴형(13.8%), ④ 임시일용 지속형(15.5%), ⑤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15.8%)'으로 총 5개의 궤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부도 1-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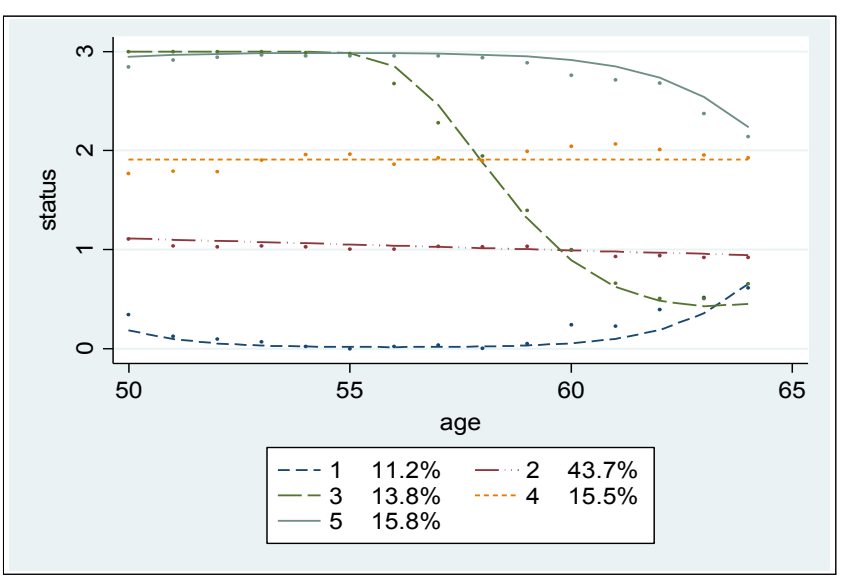

주: 1) status: 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0), 자영자(1), 임시일용직(2), 상용직(3)
2) N=73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1유형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다 60세 이후 점차 자영자 상태로 접어드는 *'후기 자영자 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혹은 장기실업을 경험한 뒤, 자영자가 되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즉 고령기에 접어든 뒤, 자영자로서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상태이다.[38]

2유형은 50세 이후 계속 자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영자 지속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가장 큰 비율(43.7%)을 나타낸다. 남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도출한 '자영자 유지형(4유형)'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3% 포인트 가량 더 높게 나타난다.

앞서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궤적 유형과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상용직을 55세까지 유지한 이후 서서히 은퇴하거나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이행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55세를 기점으로 상용직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3유형은 '*상용직 은퇴*형'으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임금근로자 내 종사상 지위가 변하는 5유형은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으로 명명하였다. 50세 이후에도 계속 임시일용 일자리에 머무르는 4유형은 *'임시일용 지속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남성은 대체로 50세의 경제활동상태를 64세까지 계속 유지하며, 60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3/4 가량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로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궤적 추이 역시 완전한 미취업 상태('0')에 수렴하지 않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8) 이승렬, 손연정(2018)에서도 이 같은 자영자로의 진입 유형이 약 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남성 궤적

〈부표 2-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남성 궤적(5유형)

(단위: 만 원)

구분	1유형 (후기 자영자 진입형)	2유형 (자영자 지속형)	3유형 (상용직 은퇴형)	4유형 (임시일용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전체 (50~64세)	15.0	238.91	202.48	182.18	287.48
50~59세	9.23	258.93	294,69	193.45	321.08
60~64세	**27.5**	**202.68**	**79.67**	**161.28**	**233.56**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2-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성 궤적(5유형)

(단위: %)

구분		1유형 (후기 자영자 진입형)	2유형 (자영자 지속형)	3유형 (상용직 은퇴형)	4유형 (임시일용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92.53	29.57	39.15	19.04	7.8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92	23.95	16.23	40.03	28.3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97	18.58	13.45	30.99	28.3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16	11.17	12.33	5.77	13.84
	400만 원 이상	0.41	16.73	18.84	4.17	21.74
	200만 원 이상	**2.54**	**46.48**	**44.62**	**40.93**	**63.88**
50~59세	100만 원 미만	96.55	27.08	16.57	19.68	3.5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73	22.79	17.93	36.68	25.1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11	19.72	17.63	30.48	27.6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25	11.84	17.63	6.74	17.01
	400만 원 이상	0.37	18.57	30.24	6.42	26.65
	200만 원 이상	**1.73**	**50.13**	**65.5**	**43.64**	**71.32**
60~64세	100만 원 미만	84.56	34.07	69.23	17.86	14.6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1.27	26.04	13.97	46.23	33.4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68	16.53	7.89	31.94	29.33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	9.97	5.26	3.97	8.76
	400만 원 이상	0.49	13.39	3.64	0	13.85
	200만 원 이상	**4.17**	**39.89**	**16.79**	**35.91**	**51.94**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록 3] 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 분석: 여성

이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궤적을 1계층 모형부터 계속 증가시켜 모형별 BIC 값과 $\ln\triangle BIC$ 값을 모두 고려한 결과, 4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4계층 모형에서 해당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모두 0.95 이상이었으며(부표 3-1, 3-2 참조), 해당 모형 전체의 sigma p-value, 계층별 기울기와 절편의 p-value도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표 3-1〉 준모수적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집단별 분포: 여성

(단위: %)

구분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BIC		-12815.31	-10532.13	-9940.05	-9472.51
adj. BIC		-12812.60	-10521.30	-9925.15	-9452.20
AIC		-12808.07	-10503.18	-9900.24	-9418.23
$\ln\triangle BIC$		-	12.34	6.39	6.15
소속 확률	1	100.00	48.52	43.01	38.40
	2	·	51.47	46.27	14.85
	3	·	·	10.71	37.58
	4	·	·	·	9.15

주: N=68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3-2〉 잠재계층 4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여성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후기 진입형)	3유형 (임시일용 후 자영자 전환형)	4유형 (임시일용 반복형)
평균 사후확률	0.9906959	0.9566727	0.9860530	0.991576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한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도 3-1〕과 같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① 미취업 지속형(38.4%), ② 임시일용 후기 진입형(14.9%), ③ 임시일용 후 자영자 전환형(37.6%), ④ 임시일용 반복형(9.2%)'으로 총 4개의 궤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부도 3-1〕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4계층 모형: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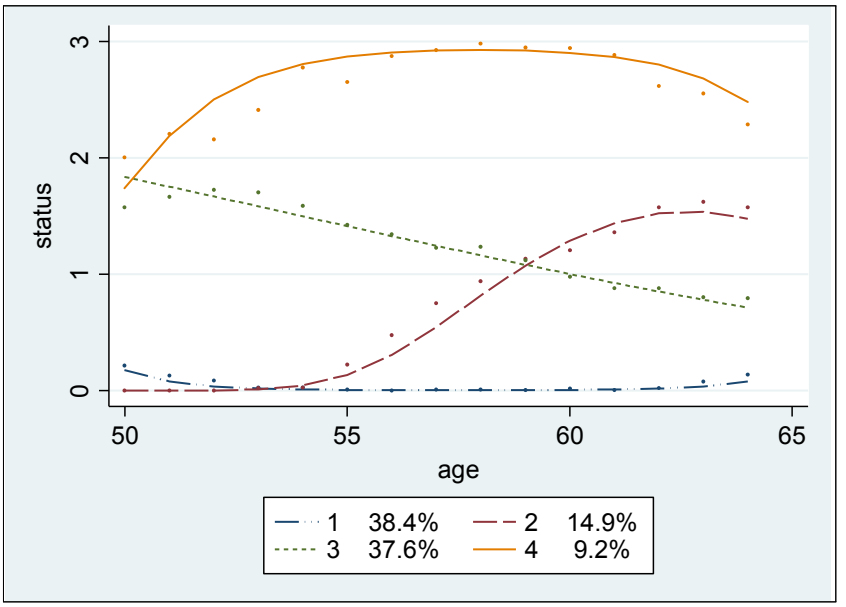

주: 1) status: 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0), 자영자(1), 임시일용직(2), 상용직(3)
2) N=68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1유형은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미취업 지속형*'으로 명명하였고, 38.4%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앞서 남성의 경우, 50세부터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더라도 60세 이후에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다르며, 여성들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 역시 훨씬 높다.

2유형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다 55세 이후 임시일용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어 *'임시일용 후기 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궤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유형은 40대를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3유형은 임시일용직으로 일한 뒤 서서히 자영자로 그 상태가 변화하여 *'임시일용 후 자영자 전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미취업 지속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37.6%)을 나타낸다.

마지막 4유형은 50세 이후에도 꾸준히 임금근로자 상태를 유지하지만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을 반복하고 있어 '*임시일용 반복형'*으로 명명하였다.

[부록 4]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여성 궤적

〈부표 4-1〉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여성 궤적(4유형)

(단위: 만 원)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후기 진입형)	3유형 (임시일용 후 자영자 전환형)	4유형 (임시일용 반복형)
전체 (50~64세)	5.05	50.79	103.25	150.26
50~59세	3.27	84.00	97.31	167.37
60~64세	**8.61**	**0.63**	**114.68**	**120.12**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4-2〉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여성 궤적(4유형)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후기 진입형)	3유형 (임시일용 후 자영자 전환형)	4유형 (임시일용 반복형)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97.71	76.91	56.90	27.8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94	15.90	29.69	54.9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18	4.90	7.29	7.4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13	0.54	2.94	5.38
	400만 원 이상	0.04	1.74	3.18	4.44
	200만 원 이상	**0.35**	**7.18**	**13.41**	**17.22**
50~59세	100만 원 미만	98.65	61.57	61.25	22.3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06	26.41	26.18	57.17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13	8.20	6.76	8.4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10	0.91	2.53	6.75
	400만 원 이상	0.07	2.91	3.27	5.27
	200만 원 이상	**0.3**	**12.02**	**12.56**	**20.46**
60~64세	100만 원 미만	95.83	99.73	48.54	37.5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71	0.27	36.43	50.9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26	0	8.31	5.5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20	0	3.71	2.97
	400만 원 이상	0	0	3.01	2.97
	200만 원 이상	**0.46**	**0**	**15.03**	**5.94**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록 5] 종사상 지위별·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비교

〈부표 5-1〉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단위: 만 원)

구분	자영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전체 (50~64세)	265.3	142.2	253.3
50~59세	281.0	145.4	268.0
60~64세	**235.8**	**138.0**	**214.8**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도 5-1〕 연령 변화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전체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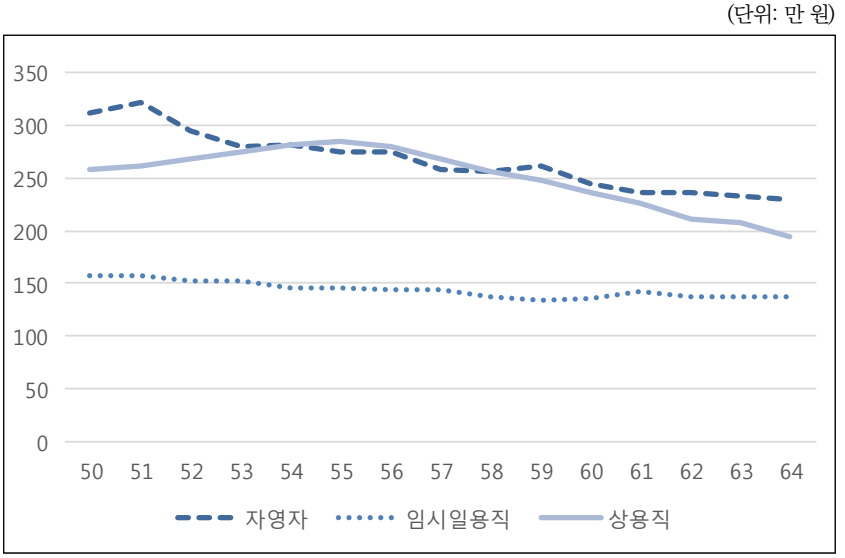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2〉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남녀 구분

(단위: 만 원)

구분	자영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0~64세)	295.5	162.7	173.9	99.9	309.9	160.4
50~59세	316.8	182.2	179.7	100.9	328.9	162.2
60~64세	**256.2**	**175.3**	**166.8**	**98.6**	**256.2**	**156.2**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3〉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전체

(단위: %)

구분		자영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20.60	31.35	8.5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7.24	47.37	41.98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81	18.47	21.2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3.02	2.25	11.15
	400만 원 이상	18.33	0.56	17.07
	200만 원 이상	**52.16**	**21.28**	**49.48**
50~59세	100만 원 미만	19.33	32.47	9.0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6.08	45.16	37.6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1.47	19.43	20.31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3.19	2.29	12.74
	400만 원 이상	19.93	0.65	20.07
	200만 원 이상	**54.59**	**22.37**	**53.12**
60~64세	100만 원 미만	22.97	29.93	7.2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9.41	50.18	53.28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9.59	17.24	23.7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2.70	2.19	7.00
	400만 원 이상	15.33	0.46	8.75
	200만 원 이상	**47.62**	**19.89**	**39.49**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단위: %)

구분		자영자		임시일용직		상용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15.50	35.03	13.92	54.54	2.25	18.8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5.93	30.94	51.20	42.28	28.45	64.2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2.30	16.60	30.03	3.09	28.49	9.39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4.70	8.26	3.87	0.09	15.59	3.85
	400만 원 이상	21.57	9.17	0.98	0	25.22	3.69
	200만 원 이상	**58.57**	**34.03**	**34.88**	**3.18**	**69.3**	**16.93**
50~59세	100만 원 미만	13.64	35.05	14.59	55.68	1.52	22.1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4.10	31.53	48.10	43.51	25.17	59.3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3.24	16.58	32.11	3.25	26.29	9.91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5.33	7.29	4.06	0.22	17.62	4.26
	400만 원 이상	23.69	9.55	1.14	0	29.40	4.38
	200만 원 이상	**62.26**	**33.42**	**37.31**	**3.47**	**73.31**	**18.55**
60~64세	100만 원 미만	18.91	34.99	13.09	53.03	4.29	11.38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9.29	29.78	55.05	43.51	37.69	75.4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59	16.63	27.44	3.25	34.70	8.2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3.56	10.17	3.63	0.22	9.89	2.91
	400만 원 이상	17.66	8.44	0.79	0	13.43	2.12
	200만 원 이상	**51.81**	**35.24**	**31.86**	**3.47**	**58.02**	**13.23**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5〉 궤적 유형별 월 평균소득 구간별 비교: 남녀 구분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0~64세)	100만 원 미만	96.72	98.42	62.70	74.84	74.81	80.96	21.73	52.94	12.80	24.7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75	1.25	10.84	18.08	15.23	15.21	29.81	31.60	26.51	57.2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88	0.13	8.82	5.01	8.83	1.83	22.42	8.59	26.56	7.3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11	0.08	5.10	0.65	1.13	0.69	10.97	3.51	14.06	5.72
	400만 원 이상	0.55	0.13	12.54	1.42	0	1.30	15.09	3.36	20.06	4.97
	200만 원 이상	**1.54**	**0.34**	**26.46**	**7.08**	**9.96**	**3.82**	**48.48**	**15.46**	**60.68**	**18.07**
50~59세	100만 원 미만	96.36	98.27	34.59	58.18	94.15	91.56	20.85	54.31	5.40	21.0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82	1.28	18.71	30.00	3.06	6.52	27.45	30.35	24.11	57.7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16	0.19	15.50	8.36	1.67	0.79	23.29	8.44	26.68	8.11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17	0.08	8.88	1.09	1.11	0.34	11.66	3.16	17.46	7.16
	400만 원 이상	0.50	0.19	22.31	2.36	0	0.79	16.76	3.75	26.35	5.97
	200만 원 이상	**1.83**	**0.46**	**46.69**	**11.81**	**2.78**	**1.92**	**51.71**	**15.35**	**70.49**	**21.24**
60~64세	100만 원 미만	97.41	98.73	98.79	99.73	34.68	58.47	23.37	50.38	24.20	31.0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62	1.20	3.06	0.27	40.46	33.65	34.21	33.95	30.22	56.3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32	0	1.67	0	23.70	4.06	20.80	8.87	26.38	6.1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0	0.07	1.11	0	1.16	1.43	9.67	4.16	8.83	3.27
	400만 원 이상	0.65	0	0	0	0	2.39	11.95	2.63	10.37	3.27
	200만 원 이상	**0.97**	**0.07**	**2.78**	**0**	**24.86**	**7.88**	**42.42**	**15.66**	**45.58**	**12.66**

주: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6〉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남성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50~59세	A값 미만	98.84	59.92	98.89	61.61	43.31
	A값 이상	1.16	40.08	1.11	38.39	56.69
60~64세	A값 미만	99.35	99.76	89.60	72.32	72.60
	A값 이상	**0.65**	**0.24**	**10.40 (+9.29)**	**27.68 (-10.71)**	**27.40 (-29.29)**

주: 1)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2) 2019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은 2,438,679원.
3) 괄호 안의 수치는 50~59세 대비 60~64세 비율 변화(%포인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부표 5-7〉 궤적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별 비교(국민연금 A값 기준): 여성

(단위: %)

구분		1유형 (미취업 지속형)	2유형 (임시일용 은퇴형)	3유형 (후기 임시일용 진입형)	4유형 (자영자 지속형)	5유형 (임시일용 후기 전환형)
50~59세	A값 미만	99.62	92.36	98.65	89,69	82.82
	A값 이상	0.38	7.64	1.35	10.31	17.18
60~64세	A값 미만	99.93	100.0	94.51	91.13	90.20
	A값 이상	**0.07**	**0.0**	**5.49 (+4.14)**	**8.87 (-1.44)**	**9.80 (-7.38)**

주: 1) 해당 수치들은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2) 2019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은 2,438,679원.
3) 괄호 안의 수치는 50~59세 대비 60~64세 비율 변화(%포인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2019년). 원자료.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